

2018년 법인 창립 회의자료

비영리 법인 설립을 위한
창 립 총 회



- 일시 : 18년 7월 5일 목 11:30~
- 장소 : 충청남도교통연수원 대강당

전국건설기계연합회
<http://kungi.kr>

비영리법인 설립 창립총회 순서

행 사	1. 성원보고, 개회선언 —회장 2. 국민의례 —사회자 3. 참석자 소개 —사회자 4. 개회사(법인 창립총회에 즈음하여) —회장
보 고	1. 1/4,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6 2. 1/4, 2/4분기 이사회 결과 보고 —10 3. 법정단체 완성 집회 결과 보고 —16 4. 2018년 상반기 감사 보고 —28 5. 건설기계 사업자 협의체 결과보고 —49
안 건	1. 비영리 법인(사단법인) 설립 건 —61 - 명칭, 정관제정, 임원, 사업 등 2. 건설기계 작업시간 준수 건 —101 3. 서울경기인천굴삭기 협회 명칭 건 —102 4. 기타토의 —103
첨 부	1.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정관 —104 - 2018년 1월 3일 10차 개정



전국건설기계연합회

[비영리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전국 대의원님, 임원진 여러분!

어느덧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 각종 건설 토목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시는 건설기계인들의 노고에 경하를 드리며, 바쁜 일을 마다하고 전국 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들 발전을 위해 참석하신 대의원님, 임원진, 내외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국 대의원님, 임원진님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6개월 여간 오직 전국건설기계연합회의 임의단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정단체 완성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앞 굴삭기를 동원한 집회, 그리고 국토교통부 제의에 의해 4개월 여간의 건설기계 기종간 TF 진행,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소극적인 대응, 2017년말 국토부 건설산업과 담당과장, 주무관 타 부서로 전출로 인한 TF 활동 결과 백지화, 끊임없이 비영리법인 신청서류 접수, 국토상임위 중심 국회의원 면담 및 민원제기 등을 이어 왔으며, 지난 1월 3일 제8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 결의로 2018년내 법정단체 완성을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33일간 광역 시도연합회, 산하 시군 기종 협회가 함께하는 대규모 장기간 집회를 진행 했습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법정단체 완성을 위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집회에서 굴삭기, 지게차, 천공기 등 10여대가 동원 되었으며, 16개 광역시도를 포함하여 연인원 2,000여명과 전국 3만여명의 회원님들이 수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뜨거운 열정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제의에 따라 관련 학계와 기종들이 참여하는 건설기계 사업자 발전방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1개월간 진행으로 최종 합의에 도출 했습니다. 비록 100%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출범 8년만에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모든 성과는 전국 3만여명의 회원님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전국 대의원님, 임원진님 여러분!

우리 전국건설기계연합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건설기계 단체 중 국내 최대 단체임

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든 임원진님들이 느껴 왔듯이 임의단체라는 한계로 정부, 지자체, 건설사, 심지어 노동조합 탈을 쓴 건설기계노조에게 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 왔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1978년 사)대한중기협회로 설립하여 지난 약 40년간 회장이 두 번 바뀌며, 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들의 권익은 뒤로하고 관리사 위주 운영 및 모든 사업 관리사 편에서 회비 건설기계 검사비에서 강제 징수 등 불법 행위, 각 기종간의 불협화음 조장 등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대표 단체로 행세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단법인 창립총회는! 지난 8년간의 전국건설기계연합회 활동의 서러움과 어려움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동안 수많은 건설기계인 선배님들! 동료님들의 뜨거운 헌신과 봉사노력에 전국의 약 15만명의 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를 대표하는 법정단체 완성을 위한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제2도약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 및 임시총회는 전국의 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들을 대표하는 법인 설립을 위한 출발이며,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약 3만여명의 회원님들의 조직력과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 법정단체 설립을 위한 총회에서는 그동안 건설기계 선배님들의 전통성과 역사성의 계승발전, 법정단체로서의 위상 정립과 추진사업 등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취적인 논의가 되어주길 희망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기종간, 지역간 반목과 대립은 뒤로하고 강력한 조직력을 되살리는데 집중적인 토론이 되길 희망 합니다.

끝으로 전국건설기계 임원님들은 각자 맡은바 지역에서 조직 확대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더운날 바쁜 와중에도 임시총회에 참석하신 전국 임원진님, 내외빈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 총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전국 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들의 권익향상과 발전을 위해 의견 제시와 중지를 모아 주시고, 지역 간, 기종 간 상호 불신을 털어버리고, 건설기계인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는 것을 다시한번 새기길 소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4일

전국건설기계연합회 회장 이주성 배상

보 고 사 항

1. 1/4,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2. 1/4, 2/4분기 이사회 결과 보고
3. 법정단체 완성 집회 결과 보고
4. 2018년 상반기 감사 보고
5. 건설기계 사업자 협의체 결과보고



전국건설기계연합회

보고1
1/4,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월	일	활 동 내 용	비고
1월	2	▶사무기구 2018-제1차 회의 진행 -제8차 정기총회 대비 준비사항 점검 등	
	3	▶2017년 4/4분기 정기이사회 및 제8차 정기총회 -충남 천안 목천 MG 인재개발원	
	4	▶제8차 정기총회 및 임원 워크숍 2일차 ▶경기 안성협회 회장 이취임식 -경기 안성 더AW웨딩컨벤션	
	8	▶충남 천안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충남 천안 아이비웨딩 2층	
	9	▶울산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울산 옥동문화비페 연회장	
	11	▶강원 속초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강원 속초 아남프라자	
	15	▶충북연합회 정기총회 및 임원 워크숍 -충북교통연수원 ▶전북연합회 정기총회 및 화합의 밤 -전국여성교육문화센터	
	18	▶대구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5층	
	21	▶대한펍프카 협회 정기총회 -경기 안산 문화예술회관 달맞이극장	
	22	▶고정유형자산 처분과세 국회 공청회(이언주국회의원)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1층 제1세미나실	
	30	▶중앙회 사업관련 충남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충남연합회 사무실	
2월	31	▶대전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대전 오정동 웨딩캐슬	
	1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회장단 긴급회의 -광명역근처 시추조사협회 사무실	
	5	▶강원연합회 시군 전체 임원진 워크숍 -강원 속초 금호콘도	

	7	▶대전, 충남, 충북연합회 임원진 제3차회의 -충북연합회 주체 청주시 본가장수촌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항의방문 -경북 김천협회 과징금 관련 건	
	8	▶제주연합회 정기총회 -제주 미래컨벤션센터 ▶대형기종 조직강화 위원회 2018-제1차 회의 -경북 영천 경북연합회 사무실	
	9	▶전국굴삭기조종사노동조합 업무협의 -경기 수원 굴삭기조종사노동조합 사무실	
	12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모임 임시회의 -시흥시 대한펌프카협회 사무실 ▶경북 김천협회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세종시 공정위 본청	
	19	▶민법에 의거한 사단법인 설립 신청 서류 제출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20	▶전남 장흥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전남 장흥 군민회관	
	21	▶대구연합회 정기 이사회 -대전 유성구 대한중공업 회의실	
	26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모임 출범식 -경기 대부도 시추조사협회 주기장	
	27	▶제주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제주 칼 호텔 ▶정기이사회 대비 광역 시도 회장단 워크숍(1박 2일) -제주연합회	
3월	2	▶1/4분기 업무 및 회계감사 -대전 중앙회 사무실	

월	일	활 동 내 용	비고
3월	5	▶사단법인 인가촉구 국토부 앞 집회 진행 -4월 6일까지 33일간 집회 진행	
	7	▶1/4분기 정기 이사회 개최 -세종 르호봇 세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	

4월	6	▶공법단체 인가촉구 국토부 앞 집회 장소 마무리 -현수막 투쟁천막 정리	
	9	▶2018-제2차 광역시도 회장단 회의 -대전 중앙회 사무실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모임 제2차 회의 -18시 광명역 시추조사협회(회장, 경기회장, 처장)	
	11	▶국토부 주관 협의체 제1차 회의 참석 -한강홍수통제소	
	18	▶국토부 주관 협의체 제2차 회의 참석 -한강홍수통제소	
	24	▶대형기종조직강화위원회 2018-제2차 회의 -대전 중앙회 사무실	
	25	▶국토부 주관 협의체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 -한강홍수통제소 (회장, 수석, 총장, 팀장, 처장)	
	27	▶사단법인 인가 신청서류 접수(제3차) -국토교통부 민원실	
5월	1	▶광역시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광주연합회 (회장, 사무총장, 팀장)	
	2	▶국토부 주관 협의체 제3차 회의 참석 -한강홍수통제소(회장, 수석, 총장, 팀장)	
	8	▶건설기계 사업자 협의체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입장 국 토부에 공문 전달	
	10	▶국토부 주관 협의체 최종 합의문 사전 협의 -국토부 건설산업과 (처장)	
	11	▶국토부 주관 협의체 제34 회의 참석 (최종 합의) -한강홍수통제소(회장, 수석, 총장, 팀장)	
	16	▶2018-제3차 광역시도 회장단 회의 -대전 중앙회 사무실	
	17	▶경제파탄 정책토론회 참석(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서울 국회의사당 제1세미나실	

	23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모임 제3차 회의 참석 -광명역 근처 시추조사협회 회의실 (처장)	
	28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 투쟁천막 및 집회용품 철수 -수석, 총장, 경남회장, 대전회장, 팀장, 처장	
	30	▶2018년-제1차 임시총회 장소 섭외 -충북교통연수원 등 방문 (처장)	
	31	▶건설기계 사업자 발전방안 협의체 후속조치 협의 - 국토교통부 회의실 총장, 처장 참석	
6월	1	▶법정단체 인가 관련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 - 국토부 건설산업과 (회장, 팀장)	
	8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업무협의(수원 신갈) - 건설기계사업자 노동조합 가입관련 조합원 지위 부존재 소송 관련 협의 (대전회장, 대전팀장,처장)	
	10	▶전북 남원협회 체육대회 참석 (회장, 팀장)	
	11	▶건설기계 사업자 협의체 정책협의회 1차회의 - 5월 11일 협의체 합의사항 후속조치 협의 - 대건협 회의실 총장, 팀장, 처장, 대전회장, 경남회장, 대전팀장 참석	
	13	▶2/4분기 정기이사회 개최	

2018년 1/4분기 정기이사회 회의결과

- ◆ 개최일자 : 2018년 3월 7일(수) 14:00 ~ 18:00
- ◆ 장 소 : 세종시 르호봇 세종비즈니스센터 (나성동 361-23)
- ◆ 성원이사 : 44명 중 38명 참석



이번 1/4분기 정기이사회는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류 접수에 따라 사단법인 인가 촉구를 위하여 3월 5일부터 집회가 진행되어, 10:00~13:00시 까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사단법인 인가촉구 집회 완료 후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 보고사항

- ▶ 2017년 1/4분기 정기이사회 회의결과 1월 3일 제8차 정기총회 결과
- 시간 관계상 회의 자료로 대체 함.
- ▶ 1/4분기 감사보고 - 이승원 감사님이 보고함.

2. 회의결과

No	안 건 명	의 결 사 항	비고
1	사무총장 선임 건	▶ 경남연합회 최춘식 전)회장님을 만장일치로 인준함.	
2	현장 대응팀장 신규 채용 건	▶ 논란 속에 가승인 건이 수정안이 발의되어, 승인, 가승인건으로 찬반 거수투표 결과 가승인 으로 수정안이 확정됨. -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가승인 됨. (현 장대응 팀장 / 문성진) - 찬성/23명, 반대/11명, 기권/4명	
3	건설기계 임대단가 지역별 점검 건	▶ 각 지역별 정보공유 및 연대로 건설기계 임 대단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다.	
4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집회 건	▶ 공법단체 완성시 까지 세종시 국토부앞 집 회는 무기한 진행한다. ① 3월 둘째주는 중앙회 차원에서 진행한다. ② 3월 셋째주 12일(월), 13일(화), 14일(수)은 광역시도연합회 회장단이 진행한다. ③ 3월 15일(목)부터는 광역시도연합회 가나다 순에 의거하여 릴레이식 집회를 진행한다.	
5	2018년 한국중장비전시회 개최 건	▶ 기 업무 협약에 따라 주체사로서 한국중장 비전시회를 진행한다.	
6	서울 카고협회 전국 조직화 건	▶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 한다.	
7	건설기계 타 지역	▶ 타 지역 투입 시 신규 공사현장은 해당지역	

	투입 건	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며, 공사 진행 현장은 해당지역과 사전 협의, 체불 등 문제발생 현장은 투입하지 않는다.	
8	굴삭기 불법어태치먼트 사용금지 권장 건	▶ 불법 어태치먼트 사용에 따른 일감축소, 타 기종과 갈등, 안전사고 위험, 사고발생시 보험 처리 불가 등에 대하여 지속 홍보 한다. - 국토부, 제작사, 지게차 등과 함께 불법 어태치먼트 사용 금지에 대한 간담회를 추진한다.	
9	비상근 법무팀 구성 건	▶ 광역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재 논의하여 추진 한다.	
10	기타토의	▶ 중앙회 회비납부 건 - 정관에 의거하여 3월 말까지 회비납부를 최대한 협조한다.	

3. 참석자 명단

2018년 1/4분기 정기이사회 서명지						2018년 3월 7일 수요일 / 르호봇 세종비즈니스센터					2018년 3월 7일 수요일 / 르호봇 세종비즈니스센터					
No	소속	성명	연락처	서명	비	No	소속	성명	연락처	서명	No	소속	성명	연락처	서명	비고
1	강원	이주원	010-9089-4748			16	대전	최병열	010-2746-1198		30	전북	박명열	010-7128-0390		
2		고정환	010-5373-3698			17		가강현	010-5437-4637		31		김종인	010-9214-6564		
3		고효수	010-5384-3348			18	부산	김형부	010-3832-0801		32	제주	이훈형	010-3691-8581		
4	경기	최창섭	010-3771-6248			19		이성환	010-3872-2778		33		변성훈			
5		배성일	010-4993-0506			20	서울	안용현	010-8889-1221		34	충남	백상현	010-5189-2750		
6		주형수	010-8408-5948			21		김종열	010-8987-7590		35		오수환	010-4125-8166		
7	경남	이현	010-9316-4708			22		박영진	010-5248-3310		36	충북	이동현	010-4691-4830		
8		김대진	010-3854-9437			23	울산	윤영기	010-3574-0224		37		허상현	010-5482-8136		
9		이성운	010-8859-5907			24		고형태	010-3870-1825		38	충청	이주성	010-3779-4305		
10	경북	공재욱	010-6873-7300			25	인천	박창근	010-3712-0169		39		이동희	010-5445-0393		
11		김홍대	010-2664-9886			26		김영배	010-5316-3608		40		이성일	010-2723-1233		
12	광주	신일용	010-3602-0190			27	전남	김재토	010-5323-0998		41		신명철	010-8242-2936		
13		이훈생	010-2303-6424			28		최태훈	010-9433-0482		42		김기호	010-3634-8247		
14	대구	차상극	010-3519-8882			29		김길성	010-3628-1504		43		권영길	010-5463-3140		
15		박세영	010-3539-7498								44		이정우	010-5403-6030		

▶총원 : 44명 ▶참석 : 44명

2018년 2/4분기 정기이사회 회의결과

- ◆ 개최일자 : 2018년 6월 13일(수) 11:30 ~
- ◆ 장 소 : 대전 중앙회 사무실
- ◆ 성원이사 : 45명 중 30명 참석



이번 2/4분기 정기이사회는 6월 6일이 현충일 국경일 관계로 인하여 둘째 주 수요일에 개최 하였다. 특히 지난 5월 11일 국토부 주관 건설기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 최종 합의사항 이주성 회장님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또한, 전국건설기계연합회 법정단체 완성과 7월 5일 전국 전체 임원이 함께하는 임시총회를 앞두고 사전 협의 및 이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의 의결 되었다.

1. 보고사항

- ▶ 2018년 1/4분기 정기이사회 결과, 월별 주요업무 보고
 - 원활한 회의진행, 시간 관계상 배포된 회의 자료로 대체 함.
- ▶ 2/4분기 감사보고 - 황용진 감사님이 보고함.

2. 회의결과

No	안 건 명	의 결 사 항	비고
1	건설기계 작업시간 준수 건	▶ 7월 5일 임시총회에서 작업시간 준수와 현장 홍보, 순찰 강화에 관련하여 재 논의한다.	
2	법정단체 완성 관련 건	▶ 7월 5일 임시총회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법인 신청 관련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 법인 신청서류 명칭은 가칭 사)건설기계사업자협의회(건사협)로 하며, 7월 5일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5월 11일 합의사항 관련하여 지역에서 요청 시 중앙회 차원 설명회를 진행한다.	
3	7월 5일 임시총회 개최 건	▶ 7월 5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 참석단위 : 중앙대의원, 광역 시도연합회 임원, 산하시군, 기종협회 임원진, 회원 등 - 사단법인 창립총회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4	서울 카고협회 전국 조직화 건	▶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 한다. - 서울 카고 협회 최영태 회장님이 제안 설명함	
5	대건협 회비 강제 거출 지입사 고발 건	▶ 7월 5일 임시총회에서 전국 임원을 대상으로 홍보한다.	
6	대건협 조사원증	▶ 직접, 비밀, 무기명 표결처리로 안건 종결함.	

	현황 파악 및 이 승원 감사 정관에 의한 유권해석 건	- 현행유지(감사 업무 수행)으로 찬반 투표 (찬성/15표, 반대/9표, 기권/3표)	
7	기타토의	1) 대한건설기계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전국건설기계연합회에서 탈퇴시키는(2018년 6월 30일한 기준) 안건으로 표결 처리함. - 찬성/25표, 반대/2표, 무효/2표 - 2018년 7월 1일부터 대건설 가입 회원은 탈퇴시킨다. 2) 중앙회 사무실 이전 건 -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 한다. 3)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주관, 건설기계 사업자 조합원 지위 부존재 소송 협조 건. - 중앙회 차원에서 대응하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참석자 명단

2018년 2/4분기 정기이사회 서명지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 대전 중앙회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 대전 중앙회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 대전 중앙회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 대전 중앙회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 대전 중앙회					
No	소속	성명	연락처	서명	비고	No	소속	성명	연락처	서명	비고	No	소속	성명	연락처	서명	비고
1	강원	이주원	010-9089-4748		.	16	대전	최병열	010-2746-1198		.	32	제주	이문형	010-3691-8581		.
2		고정환	010-5373-3698			17		김형현	010-5437-4637		.	33		변성훈			
3		고효수	010-5384-3348			18	부산	김형부	010-3832-0801		.	34	충남	백상현	010-5189-2750		.
4	경기	최창섭	010-3771-6248		.	19		이성환	010-3872-2778			35		오수환	010-4125-8166		.
5		배성일	010-4993-0506		.	20	서울	안용현	010-8889-1221		.	36	충북	이동현	010-4691-4830		.
6		주형수	010-8408-5948		.	21		김종열	010-8987-7590		.	37		허상현	010-5482-8136		.
7	경남	이한	010-9316-4708		.	22		박영진	010-5248-3310		.	38	중앙	이주성	010-3779-4305		.
8		김대진	010-3854-9437		.	23	울산	윤영기	010-3574-0224		.	39		최준석	010-9220-5000		.
9		이성운	010-8859-5907			24		고형태	010-3870-1825		.	40		이동희	010-5445-0393		
10	경북	공재욱	010-6873-7300		.	25	인천	박창근	010-3712-0169			41		조국현	010-4750-1237		.
11		김홍대	010-2664-9886		.	26		김영배	010-5316-3608			42		신명철	010-8242-2936		
12	광주	신일용	010-3602-0190		.	27	전남	김재토	010-5323-0998		.	43		김기호	010-3634-8247		
13		이훈생	010-2303-6127			28		최태훈	010-9433-0482		.	44	전북	권영길	010-5463-3140		
14	대구	차상국	010-3519-8882			29	전북	김길성	010-3628-1504		.	45		이정우	010-5403-6030		
15		박세영	010-3539-7474			30		박명열	010-7128-0390		.						
						31		김종민	010-9214-6564		.						

총점 : 45명
참석 : 명

총참 : 45명
참석 : 명

1. 법정단체 완성 국토부 앞 집회 진행 경과

일차	월	일	내 용	비 고
1	3	5	▶ 이주성회장님, 이주원수석부회장님, 중앙회국장 - 굴삭기지원 이주성회장님 8W, 권영길국장 10, 이동희 국장03LC, 경기안산협회 6W, 대전연합회 08LC	중앙회
2	3	6	▶ 이주성회장님, 이주원수석부회장님, 중앙회국장(신명 철, 김기호, 이청우)	“
3	3	7	▶ 2018년 1/4분기 정기이사회 개최 - 지게차연합회, 시추조사협회 합류 -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요청 전달 - 지게차 2대 합류	“
4	3	8	▶ 중앙회장님, 수석부회장님, 중앙회국장님, - 전남 장흥연합회 임원진, 충북 청주연합회 임원진, 경기 안산협회 임원진 합류	“
5	3	9	▶ 중앙회장님,이주원수석부회장, 중앙회국장님, - 대전연합회 이규철감사 6LC투입, - 경기 안산시협회 임원, 충남 공주연합회 합류 - 이주성회장님 국토일보에서 취재 - 시추조사협회 시추기 1대 합류	“
6	3	10	중앙회 임원 당직	
7	3	11	중앙회 임원 당직	
8	3	12	▶ 대구, 경북,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경기, 강원연합회 - 충북 이동현회장님 03LC 지원 - 지게차연합회 임원진, 레미콘 정웅원 회장님, 시추협회 임원진 합류 - 서울 카고크레인협회 -최영태회장 외9명 - 2시 국토부 박병석과장 외2명 면담(강성조지게차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시추협회 정일문회장님) - 시추조사협회 지태구 회장님 식당 식대 100만원 선납	광역시 도 회장단
9	3	13	▶ 강원, 대전, 충북, 경남, 서울, 전남연합회 회장님, - 사무총장님 국토부장관 자택 앞 집회 신고함	“

			- 이언주 국회의원실 방문 3시(사무총장, 사무처장)	
10	3	14	▶ 강원, 경기, 대전, 충북, 경북, 전북연합회장님 - 인천연합회장님 굴삭기 10굴삭기 투입	“
11	3	15	▶ 강원연합회 77명 참석 - 전북연합회장님 합류 - 국토부 박균성사무관 면담	강원
12	3	16	▶ 경기연합회 80명 참석 - 강원연합회 임원, 전북, 충북, 경남 회장님 합류	경기
13	3	17	중앙회 임원 당직	
14	3	18	중앙회 임원 당직	
15	3	19	▶ 경남연합회 60명 참석	경남
16	3	20	▶ 경북연합회 71명 참석	경북
17	3	21	▶ 광주연합회 21명 참석 - 이주성회장님-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책보좌관 10시 면담 - 경기, 전북회장님, 경기임원, 팀장-김현미 장관 일산 집 무실 보좌관 면담11시 - 수석부회장님 인터넷뉴스와 인터뷰	광주
18	3	22	▶ 대구연합회 26명 참석 - 중앙회장님 대전시장 예비후보 박영순 면담 -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경기 파주 김재일 회장 3명-대 건협 정기총회 장소 참여 - 중앙회장님-오마이뉴스와 인터뷰	대구
19	3	23	▶ 대전연합회 26명 참석	대전
20	3	24	중앙회 당직	
21	3	25	중앙회 당직	
22	3	26	▶ 부산연합회 18명 참석 - 지게차연합회 임원진 합류	부산
23	3	27	▶ 서울연합회 35명 참석	서울
24	3	28	▶ 울산연합회 7명 참석 -박영근전임회장님, 전임국장 최삼경, 정찬용, 이세호, 중 앙회 황용진 감사님 합류 - 대전연합회 3명, 전북연합회 회장님 합류 - 이언주 국회의원 집회 현장 방문 30분간 면담 (중앙회	울산

			장님, 지게차강성조회장, 수석부회장, 박영근고문님)	
25	3	29	▶ 인천연합회 20명 참석	인천
26	3	30	▶ 전남연합회 30명 참석 -중앙회장님, 경남 이한회장님, 민홍철의원 면담-11시	전남
27	3	31	중앙회 당직	
28	4	1	중앙회 당직	
29	4	2	▶ 전북연합회 51명 참석	전북
30	4	3	▶ 제주연합회 22명 참석 - 10시 30분 건설정책국장 면담(회장님, 수석부회장님) - 14시 이언주 국회의원 면담(회장님, 수석부회장님)	제주
31	4	4	▶ 충남연합회 35명 참석	충남
32	4	5	▶ 충북연합회 76명 참석	충북
33	4	6	▶ 중앙회장님, 수석부회장님, 사무총장님	중앙
34	4	7	중앙회 당직	“
35	4	8	중앙회 당직	“

※ 상기 일차별 참석자 인원은 중앙회에서 집계한 인원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 2018년 집회기간 중 투쟁기금 수입지출 보고

<수입부>

계정과목	적 요	금 액
전년이월	전년이월	2,995,670
집회 찬조금	2.2 중앙회이주성회장님	5,000,000
	3.2 광역시도 전직 회장단(회장-백영택,총무-이성호, 이승원,전창주,이석구,김이용,권영국,김기원,박용호,박태성,권영덕,백옥균,길기종)	1,000,000
	3.6 중앙회 이주원수석부회장님	1,000,000
	3.8 우제식-화성동부	100,000
	3.8 제주 박상욱님	50,000
	3.8 이영섭님	100,000
	3.9 전남 장흥연합회 이은철회원(3.8현장 납부)	1,000,000
	3.11 김포 김학규님	300,000
	3.12 경기도연합회 최창섭회장님(3.12현장 납부)	1,000,000

3.12 경북연합회 공재옥회장님	1,000,000
3.12 시추조사협회 정일문회장님	500,000
3.12 전남장성 조성엽님	200,000
3.13 중앙회 최춘식 사무총장님	1,000,000
3.13 제주도연합회 전임 김호열회장님	500,000
3.14 인천연합회 박창근회장님	1,000,000
3.14 울산연합회 윤영기회장님(최연희로 입금)	1,000,000
3.14 전남장흥연합회 김기호회장님외((김기호회장100만원, 사무국장이철30만원, 6w협의회장오재식30만원, 이종인회원30만원, 정대승회원20만원, 김광옥회원20만원, 김태완6w협의회총무10만원, 최태성회원30만원, 김재성감사10만원, 위성인회원10만원)	3,000,000
3.15 강원도 18개 시군연합회일동	1,700,000
3.15 강원도연합회 임원일동	700,000
3.16 (유)대한중공업(집회현장)	1,000,000
3.16 경기도 안산시 연합회	1,000,000
3.19 삼척신성중기	100,000
3.19 전국지게차연합회	1,000,000
3.19 경남하동협의회	200,000
3.19 경남밀양협의회	200,000
3.19 경남김해협의회	200,000
3.19 경남고성협의회	200,000
3.19 경남창원협의회	200,000
3.23 강원연합회 대형태극기 구매 대납 입금	70,000
3.23 대구연합회	1,000,000
3.23 대전연합회	1,000,000
3.23 건설불러중기	500,000
3.23 이주성회장님	1,870,960
3.23 김규섭	100,000
3.27 부산연합회	1,000,000
3.27 순천 정병수,김인호회원	1,000,000
3.29 전남연합회	1,000,000
3.30 광릉	1,000,000
4.2 03황병록	100,000
4.3 김재일 자유로중기	500,000
4.4 전북연합회	1,000,000
4.4 제주도연합회	1,000,000
4.4 충남연합회 전임회장 김명배	100,000
4.4 충남연합회 사무처장 오수환(현장)	200,000
4.4 중앙회 전임감사 이준배	200,000
4.4 충남연합회	1,200,000

	4.4 충북연합회	1,000,000
	5.10 전남연합회	400,000
	5.10 집회 굴삭기 지원 추레라 운반비-안산 손춘용회장 이사회 미결로 인한 재입금	1,000,000
	5.16 집회 굴삭기지원 추레라 및 화물운반비-인천박창근 회장이사회 미결로 인한 재입금	1,900,000
수입합계		42,286,630

<지출부>

계정과목	적 요	금 액
집회 지출	3.3 집회 전선구입	55,000
	3.5 집회 방송차 유류비	90,000
	3.5 집회 조식대	28,000
	3.5 집회 현장발전기 구입	1,800,000
	3.5 집회 중식대	88,000
	3.6 집회 조식대	39,000
	3.6 집회현장 USB외	35,400
	3.6 집회 중식대	72,000
	3.6 집회용 육성녹음 박광신아나운서	1,000,000
	3.6 집회용품구입-황룡철물점	18,000
	3.6 집회용품구입 -금강건재	38,000
	3.6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60,000
	3.8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51,500
	3.9 집회 방송차량 유류비	89,000
	3.9 집회 현수막 부착용 케이블타이	22,000
	3.9 집회현장 샌디스크USB 메모리구입	26,500
	3.9 집회 석식대	45,000
	3.12 집회현장 사각의자외	402,600
	3.12 3.5 대전-세종 1ton 집회 의자와 천막 운반비	90,000
	3.12 3.6 집회 현장 MP3다운로드 충전-멜론	10,450
	3.12 3.4 집회현장 물품구입(휴지외)	119,960
	3.12 3.8 집회 손피켓 제작용 투명시트지 구입	65,000
	3.12 2.27 집회 현장용 현황판 및 보드마카펜 구입	21,000
	3.12 3.5 집회 유류비-이동희국장님	30,000
	3.12 3.5 집회용품 함마 외 구입	74,000
	3.12 집회현수막	1,678,000
	3.12 집회 피켓	500,000
	3.12 집회 전단책자 1000권	240,000
	3.12 집회 호스 케이스철(수작업)	100,000
	3.12 집회 머리띠 1000개	450,000
	3.12 3.9 집회 방송준비용품	340,000
	3.12 3.5 집회현장 음료외	31,000

3.12 3.5 집회석식대	37,000
3.12 3.5 집회 찜질방	50,000
3.12 3.5 집회석식대	152,200
3.12 3.8 집회 석식대	286,000
3.12 집회용품 -금성철물	6,600
3.12 3.3 집회 발전기오일 구입	15,000
3.12 3.5 집회 가위외	5,200
3.12 3.5 집회 케이블타이 외	3,100
3.12 3.5 집회 스카치테이프2개	4,800
3.12 3.7 집회 형광펜 외	2,850
3.12 3.8 집회 네임펜 외	1,800
3.12 3.8 집회 마데카술 외	6,900
3.12 3.9 집회 조식대	14,000
3.12 3.10 집회 DS봉 1개	110,000
3.12 집회 중식대	87,000
3.12 집회현장 입당원서복사	25,000
3.12 집회현장 문구구입	7,750
3.12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73,000
3.12 집회 석식대	25,500
3.13 집회 조식대	24,000
3.13 집회 문구구입	26,400
3.13 찜질방 스파렉스	86,000
3.13 찜질방 스파렉스	12,500
3.14 집회 조식대	46,000
3.14 집회용품 USB메모리외 구입	25,500
3.14 집회용품	10,000
3.14 집회문구	13,500
3.14 집회용품 -금성철물점	57,200
3.14 집회 간식	18,600
3.14 집회용품 구입(전기테이프)	2,000
3.14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50,000
3.15 집회 조식대	21,000
3.15 집회현장 가스	38,000
3.15 집회문구	10,000
3.15 집회 부탄가스	6,000
3.15 집회 찜질방	48,000
3.15 집회문구	7,500
3.16 집회 조식대	10,000
3.16 집회현장 발전기 휘발유	33,000
3.16 집회 면장갑구입	16,000
3.16 집회현장 방송차 유류비	69,000
3.16 집회 문구	4,500
3.16 집회USB메모리구입	9,000

3.16 집회 강원연합회 태극기구매 대납	70,000
3.16 3.13 시추조사협회 임원진 집회현장방문 중식대	56,000
3.16 집회현장 자료 복사비	6,000
3.16 집회현장 육성녹음용 USB 메모리구입	31,970
3.16 집회간식	12,800
3.18 집회 발전기회발유	26,000
3.18 집회 방송차용품	8,800
3.18 집회 방송차유류비	80,000
3.18 집회간식	8,000
3.19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10,000
3.19 집회난로 석유비	20,000
3.19 집회-공간기획	7,700
3.19 집회 건전지구입	4,800
3.19 집회 중식대	40,000
3.19 집회 문구	20,000
3.19 집회 문구	3,200
3.15 집회현장 방송차 스피커수리	176,000
3.12 집회 방송차 유류비	64,000
3.12 3.1 집회 방송차 세차	27,000
3.12 3.2 집회 방송차 워셔액교환	8,000
3.12 3.2 집회 문팀장님 도료사용료	6,100
3.12 3.2 집회 문팀장님 도료사용료	9,400
2.27 집회 신고 접수 처장교통비	30,000
3.5-3.9 집회 현장 방문 처장교통비	81,400
3.19 3.16 집회현장 가스-팁장	38,000
3.19 대형태극기 깃발 및 자석구입	120,000
3.19 집회 각지역구 설명용 파일 구입	41,900
3.19 집회 선동용 USB 8개 구입	33,700
3.19 집회현장 쓰레기봉투 구입	14,400
3.19 집회 석식대	33,000
3.19 집회물품구입-이마트	49,800
3.19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48,000
3.20 집회 문구	10,000
3.20 집회현장 공문 복사비	272,500
3.20 집회 육성파일 복사용 USB 20개 구입	74,890
3.20 김현미장관 사무실 앞 집회용 현수막제작 총4개	140,000
3.20 김현미장관 사무실 집회용손 피켓제작 총11개	260,000
3.20 집회용품구입	13,840
3.20 집회현장 USB구입	17,000
3.20 집회현장 방송차 유류비	97,497
3.20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62,000
3.21 집회 중식대	91,000
3.21 집회 물품	32,500

3.21 집회 usb 구입(32개)	191,400
3.21 집회현장 방송차 속도위반과태료	32,000
3.21 3.7 집회 쓰레기봉투구입-이동희국장님	14,400
3.21 3.8 집회 가스난로주유-이동희국장님	20,000
3.21 3.8 집회 부탄가스-이동희국장님	5,000
3.21 3.8 집회현장 차량주유-이동희국장님	32,780
3.21 3.8 집회현장 LPG가스 외-이동희국장님	176,000
3.21 집회간식	22,000
3.21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62,500
3.22 집회문구	4,800
3.22 집회 당위성 자료배포 A4용지 8박스	158,400
3.22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48,500
3.23 3.10-3.23 집회현장방문 교통비-처장	179,000
3.23 3.13집회 의원면담 및 집회신고 교통비	94,800
3.23 3.19 발기인명부 수합 및 집회참석교통비-처장	47,200
3.23 집회 방송차 유류비	79,000
3.23 집회 난로석유	26,000
3.23 집회 건전지외 구입	5,350
3.23 집회 방송차 장비 - 팀장	30,000
3.23 집회 가스2통-팀장	76,000
3.23 집회 방송부품 콕서비스이용-팀장	20,000
3.23 집회 방송물품	95,000
3.23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12,000
3.24 집회 조식대	6,000
3.24 집회 방송차 앰프 부품교체	100,000
3.24 집회 방송차 경광등교체	50,000
3.25 집회 현장유류비	81,496
3.26 집회 현장 MP3 다운로드 충전-멜론-실장	21,450
3.26 집회 현장 MP3 다운로드 충전-멜론-처장	30,800
3.26 집회 현장 얼음	24,000
3.26 집회 방송장비 수리 출장비	100,000
3.26 집회문구	7,300
3.26 집회문구	4,000
3.26 집회방송차 유류비	90,000
3.26 집회문구	2,200
3.26 집회부탄가스	6,000
3.26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40,000
3.26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10,000
3.27 집회 물품	8,000
3.27 집회 물품	21,000
3.27 집회 문구	14,630
3.27 집회 물품-침낭구입	119,600
3.27 집회간식	9,000

3.27 집회 문구	42,000
3.28 집회 문구	5,700
3.28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20,000
3.28 집회천막 조명등 설치용 형광등외 구입	59,900
3.28 집회현장 쟁반외 구입	18,400
3.28 집회 머리띠 2000개	900,000
3.29 집회방송차 유류비	66,000
3.29 집회 문구	4,400
3.29 집회 문구	45,000
3.29 집회 문구	10,000
3.29 집회 회장님편지 전국 시군협회 발송	133,000
3.29 집회 팀장 석식대	8,000
3.29 집회 석식대	64,000
3.29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40,000
3.30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4,000
3.30 집회 관련 국회의원미팅 음료	25,630
3.30 집회현장 응급약 구입	20,000
3.30 집회 관련 국회의원미팅 커피숍	10,800
3.30 집회 관련 국회의원미팅 커피숍	10,800
3.30 집회 관련 국회의원미팅 중식대	21,600
3.30 집회 관련 국회방문 주차비	14,500
3.30 집회 문구	23,300
3.31 집회 조식대	6,000
3.31 집회 방송차 수리	370,000
3.31 집회 방송차 수리	31,000
4.1 집회 중식대	9,000
4.1 집회 방송차 주유	90,000
4.1 집회 발전기주유	32,000
4.1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10,000
4.1 집회 커피	7,500
4.2 3.30 팀장 도료사용료	7,000
4.2 3.30 팀장 도료사용료	7,000
4.2 집회 문구구입-처장	10,000
4.2 집회 얼음구입	24,000
4.2 집회 문구구입-처장	23,300
4.2 집회 회장님 편지 전국시군협회 회장단 발송	12,960
4.2 3.25 집회현수막	232,000
4.2 3.27 집회현수막	546,000
4.2 3.27 집회현수막	70,000
4.2 집회 조식대	22,000
4.2 집회관련 국회의원 면담방문 음료	10,800
4.2 집회관련 국회방문 중식대	28,800
4.2 집회관련 국회방문 주차비	18,000

4.2 집회물품구입	61,080
4.2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42,000
4.2 집회 태극기	60,000
4.2 집회 현장방문 처장교통비 3.24-3.30	130,200
4.2 집회 인쇄용 토너구입	148,000
4.3 집회 언론사교통비	200,000
4.3 집회관련 국회방문 중식대	19,000
4.3 집회관련 국회방문 주차비	10,000
4.3 집회 문구	6,600
4.3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44,000
4.3 집회 녹취파일 공증비	70,000
4.4 집회현장 아이스박스 추가로 얼음구입	24,000
4.4 집회 건전지구입	19,800
4.4 집회 자료복사용 A4 용지 구입	158,400
4.4 집회 물품구입	16,000
4.4 집회 방송차 유류비	56,000
4.4 집회 조식대	26,000
4.4 집회문구	4,000
4.4 집회물품	10,000
4.4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50,500
4.5 집회 조식대	32,000
4.5 집회 문구	24,900
4.5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30,000
4.6 집회 조식대	16,000
4.6 집회 방송차 수리	100,000
4.6 집회 석식대	6,000
4.6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5,000
4.7 집회 조식대	10,000
4.7 집회 방송차용품교체	20,000
4.8 집회 조식대	9,300
4.8 집회 방송차 유류비	77,000
4.9 집회 방송차 유류비	102,000
4.9 집회관련 국회의원실 방문 음료구입	15,000
4.9 집회 현장방문 처장교통비 3.31-4.8	129,600
4.10 집회 조식대	13,000
4.10 집회 중식대	3,600
4.10 집회 과태료(속도위반 및 전용차선 위반)	90,000
4.10 집회 과태료(속도위반 및 전용차선 위반)	90,000
4.12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11,500
4.14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6,000
4.16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6,000
4.16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5,000

4.17 집회 조식대	9,000
4.17 집회 찜질방 스파렉스	6,000
4.17 집회 물품구입	9,500
4.18 집회 조식대	8,000
4.19 전건연 대형깃대 및 자석구입	120,000
4.23 집회 찜질방	11,000
4.24 집회 식대	8,000
4.25 집회 얼음구입	24,000
4.26 집회 모자,조끼	80,000
5.10 굴삭기 추레라 운반비-인천박창근회장님	1,900,000
5.10 집회 굴삭기 추레라 운반비-안산손춘용회장님	1,000,000
5.10 집회 어깨띠10개 (퀵비용포함)	70,000
5.10 집회 생강차	4,000
5.11 집회 찜질방	21,000
5.11 집회 찜질방	5,300
5.12 집회 찜질방	10,000
5.14 집회 중식대	10,000
5.14 집회 커피	3,500
5.14 집회 커피	5,000
5.14 집회 석식대	9,000
5.14 집회 찜질방	7,800
5.14 집회 찜질방	5,000
5.15 집회 중식대	11,000
5.16 집회 찜질방	13,000
5.16 집회 조식대	7,000
5.16 집회 커피	4,100
5.16 집회 중식대	7,900
5.16 집회 커피	4,500
5.16 집회 석식대	6,000
5.16 집회 찜질방	10,000
5.16 집회 찜질방	2,000
5.25 집회현장 주차위반 과태료	40,000
5.25 집회 굴삭기 추레라운반비-이주성회장님 김천 공정 위 과징금으로 지원	600,000
5.25 집회 굴삭기 추레라운반비-인천 박창근회장님	1,000,000
5.25 집회 굴삭기 추레라운반비-안산 손춘용회장님	500,000
5.25 집회 굴삭기추레라운반비-대전 유강걸수석	300,000
5.25 집회 굴삭기 추레라운반비-충남 오수환사무처장	1,000,000
5.25 집회 시추기 추레라운반비-시추협회 지태구회장	350,000
5.25 집회 굴삭기 추레라운반비-중앙 이동희국장	350,000
5.25 집회 굴삭기 추레라운반비-중앙 권영길국장	350,000
5.25 집회 굴삭기 추레라운반비-중앙 이청우국장	350,000

	5.25 집회 연장근무 수당 중앙회 팀장	1,500,000
	5.25 집회 연장근무 수당 중앙회 사무처장	1,000,000
	5.25 집회 연장근무 수당 중앙회 실장	200,000
	5.27 집회 현장 철수 중식대	9,000
	5.27 집회 현장 철수 석식대	7,000
	5.27 집회 현장 철수 간식	16,950
	5.28 집회 현장 철수 찜질방	15,300
	5.28 집회 현장 철수 조식대	7,000
	5.28 집회 현장 철수 음료	18,000
	5.28 집회 현장 철수 잡화	7,500
	5.28 집회 현장 철수 잡화	23,700
	5.28 집회 현장 철수 장갑	4,900
	5.28 집회 현장 철수 음료	16,400
	5.28 집회 현장 철수 석식대	72,000
	5.28 집회 현장 철수 숙박비	35,000
	5.29 집회 현장 철수 조식대	7,500
지출금액		29,945,333
잔 액	14,241,297	

주문 → 정관 제36조[회계 및 회계연도], 제37조[예산 및 결산]에 의거하여 2018년 상반기 감사 보고를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018년도 1/4분기 감사보고서

정관 제14조[임원의 직무] 5항, 제36조[회계 및 회계연도]에 의거하여 2018년 1/4분기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사님께 보고 드립니다.

가. 감사개요

1. 사업기간 : 2017년 12월 19일 ~ 2018년 2월 26일
2. 감사일자 : 2018년 3월 2일 금요일 11:00~
3. 감사장소 : 중앙회 사무실
4. 감 사 자 : 이승원, 황용진 감사 / 이동희 총무국장, 최지혜 실장

나. 감사내용

① 업무 부문

2018년 3월 2일 중앙회 사무실에서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2월 26일까지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내용은 중앙회 홈페이지, 회의자료, 공문 발송 현황, 기안지, 출장보고서, 회계자료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1월 3일 전국건설기연합회 출범이후 회의체 단위로 최대 인원, 전국 임원진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정기총회 및 전국 임원 워크숍을 개최 했습니다.

제8차 정기총회와 워크숍을 통해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위상과 조직력을 다시한번 과시와, 임의단체 한계를 극복하는 공법단체 완성 중요성에 모든 참석자들이 재확인 했으며, 2018년도 내 공법단체 완성을 위해 힘찬 투쟁을 결의 하였습니다. 모두가 한مام 한뜻으로 2018년도내 반드시 공법단체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도 6월 사단법인 인가 촉구 관련 국토교통부 앞 집회 후속조치 일환으로 건설기계 사업자 TF가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약 4개월간

지속했지만 끝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타 건설기계 기종들과 함께, 우리의 최대무기인 조직력과 단결력으로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돌파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② 회계 감사 부문

회계처리에 관하여 입출금 전표와 회의자료, 영수증, 기안지, 보고서, 출장 완료 보고서 등을 근거와 광역 시도연합회 회비 납부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수입에 있어 회비 납부는 정관 제40조[회비] ③항에 의거하여 회비는 3월 말까지 선납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비 납부 광역 시도연합회는 경남연합회만 1천 5백만원을 납부 하였습니다. 중앙회 잔고부족으로 이주성 회장이 1천만원 개인사비로 회비 선 입금 및 공법단체 완성을 위한 국토교통부 집회 시 사용을 위해 5백 만원을 투쟁기금으로 찬조하였습니다.

총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2,256,743원을 포함하여 55,381,773원이며, 총지출은 제8차 정기총회 소요비 15,404,180원을 포함하여, 인건비, 유지관리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등 50,569,518원으로 현재 잔액은 4,812,255원입니다.

회계부문에 있어, 입출금 전표와 영수증, 증빙서류 등을 대조 해 보았으며, 2018년 예산계획 대비 각 항, 목별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중앙회 회비 잔고가 없습니다. 공법단체 완성을 위한 국토교통부 앞 무기한 집회와 원활한 중앙회 사업추진을 위해 여력이 되시는 광역 시도연합회는 회비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다. 감사총평

전국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앙회 임원과 광역 시도 및 산하 시군, 기종협회 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첫째, 2018년 한해! 반드시 공법단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조직대오로 돌파해야 합니다. 공법단체 완성을 위해 중앙회 임원진과 광역 시도연합회, 산하시군, 기종협회 모두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중앙회 회비가 납부되지 않아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자료 첨부 회계자료를 보면 잔액이 4,812,255원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주성 회장님 선입금 1,000만원, 집회관련 투쟁기금 찬조금 500만원을 제외하면 중앙회 실 회비는 -10,187,745원입니다. 각 광역 시도연합회는 중앙회 회비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전국건설기계연합회 회원 및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관 제7조[회원]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은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그 사업자나 대리인을 회원의 자격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그 대표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건설기계 업계와 연관이 있는 건설기계의 제작, 판매사, 부품판매업, 정비업, 폐기업, 중고건설기계매매업 및 유사건설기계 등 기타 본 회의 조직과 연관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자 및 그 대리인으로써 본 회의 목적 및 사업에 적극 찬동하여 본회와 연대하고자 회원의 가입을 신청한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승인 한다. (특별회원이 경영하는 업체를 회원사라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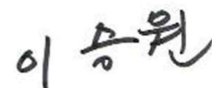
2. 임원 입후보 자격은 소속된 광역시도연합회의 중앙회 회비가 완납된 상태에서 선거 공고일 기준 정회원으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회원의 자격에 의거하여 3년 이상 계속 본인 명의의 건설기계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단, 중도 사업 중단 및 포기, 이전, 양도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018년 1월 3일 개정)

※ [참고] 정관 14조[임원의 직무]에 의거한 임원 :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국장)

상기 정관에 의거하여 건설기계 사업자가 아닌 분은 회원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립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 이 승 원



2018년 3월 2일

감사 : 황 용 진



2. 2018년도 2/4분기 감사보고서

정관 제14조[임원의 직무] 5항, 제36조[회계 및 회계연도]에 의거하여 2018년 2/4분기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사님께 보고 드립니다.

가. 감사개요

1. 사업기간 : 2018년 2월 27일 ~ 2018년 5월 31일
2. 감사일자 : 2018년 6월 8일 금요일 11:00~
3. 감사장소 : 중앙회 사무실
4. 감 사 자 : 황용진 감사 / 이동희 총무국장, 최지혜 실장

나. 감사내용

① 업무 부문

2/4분기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2018년 6월 8일 중앙회 사무실에서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내용은 중앙회 홈페이지, 회의자료, 공문 발송 현황, 기안지, 출장보고서, 회계자료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1월 3일 제8차 정기총회, 전국 임원 워크숍 결의사항에 따라, 임의단체라는 한계를 극복, 2018년내 법정단체 완성을 위한 사업이 중점 핵심사업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정단체 완성을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32일간 중앙회, 각 광역 시도연합회, 지게차, 시추조사협회 등 집회참여로 연인원 약 2,000여명이 동원된 국토 부 앞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염원을 담은 집회는 일사불란한 조직대오와 통일된 목소리로 법정단체 완성을 외쳤으며, 그 결과 국토부 주관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함께 5월 11일 최종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100%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전국건설기계연합회의 숙원사업인 법정단체 완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 큰 성과로 판단되며, 이후 합의서에 의거하여 발 빠른 후속조치 마련으로 법인 인가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② 회계 감사 부문

회계처리에 관하여 입출금 전표와 회의자료, 영수증, 기안지, 보고서, 출장 완료 보

고서 등을 근거와 광역시도연합회 회비 납부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국토부 앞 집회기간 동안 각 광역시도 및 산하 시군, 기중협회, 회원님들의 투쟁기금 납부내역과 사용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1) 먼저, 법정단체 완성! 국토부 앞 집회기간 중 투쟁기금 입출금 내역입니다!

총수입은 44,186,630원이며, 지출은 29,945,333원으로 현재 잔액은 14,241,297원입니다.

집회기간은 3월 5일부터 시작하여, 투쟁천막 및 집회용품 철수는 지난 5월 28일 철수 하였습니다. 이에, 입출금 전표, 영수증, 증빙서류 등을 대조해 보았으나 그 결과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세부 입출금 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회 회비 입출금 내역 입니다!

① 먼저, 중앙회 회비 입금 내역입니다. 수입에 있어 회비 납부는 정관 제40조[회비] ③항에 의거하여 회비는 3월 말까지 선납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비 납부현황은 213,445,000원으로 약 70%가 납부 되었습니다.

세부 회비납부 내역은 첨부 자료를 참고바라며, 미납된 광역시도연합회는 빠른시일내에 완납해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총수입은 전분기 이월금, 지난 3월 국토부 앞 집회기간 투쟁기금을 포함하여 244,764,600원이며, 총지출은 집회기간 중 집회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등 106,634,367원으로 현재 잔액은 142,942,488원입니다.

회계부문에 있어, 입출금 전표와 영수증, 증빙서류 등을 대조 해 보았으며, 2018년 예산계획 대비 각 항, 목별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 감사총평

전국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의 권익보호! 법정단체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앙회 임원과 광역시도 및 산하 시군, 기중협회 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3, 4월 법정단체 인가 촉구 국토부앞 집회에 참여하신 중앙회, 광역시도연합회 및 산하시군, 기중협회 임원진님 여러분! 그리고 투쟁기금을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 총평은!

첫째, 국토부 주관 협의체 5월 11일자 합의사항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전국건설기계연합회 법인 인가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월 11일 협의체 합의이후 후속조치 사항으로 법인 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대건협을 포함하여 각 기종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주도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 즉시 법인인가 서류 제출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법인이 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전국건설기계연합회 법정단체 완성 후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건설기계 업계 중에 국내 최대 단체입니다. 지금은 8년간의 숙원사업인 법정단체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법정단체 완성 이후 당 연합회를 어떤 사업과 어떻게 변화시켜 회원님들의 권익향상에 앞장 설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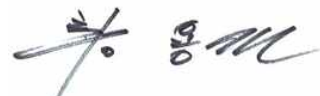
즉, 주 사무소 확장, 전문 인력 충원, 정책, 연구, 조사, 통계, 교육사업 등의 사업 확대 등 지금부터 중앙회와 광역 시도연합회 회장님들이 이후 대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2/4분기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 이 승 원

2018년 6월 8일

감사 : 황 용 진



3) 2018년 1/4분기 수입 지출 회계보고

<수입부>

적용기간(2017.12.19~2018.02.26)

계정과목	금 액	적 요	1월	2월
전월이월	22,256,743		0	
중앙회비	15,000,000	강원연합회	0	
		경기연합회	0	
		경남연합회	15,000,000	15,000,000
		경북연합회	0	
		광주연합회	0	
		대구연합회	0	
		대전연합회	0	
		부산연합회	0	
		서울연합회	0	
		울산연합회	0	
		인천연합회	0	
		전남연합회	0	
		전북연합회	0	
		제주연합회	0	
		충남연합회	0	
		충북연합회	0	
기타수입	31,550	우체국개시백	31,550	20,110
기타수입	10,000,000	중앙회 잔고부족으로 이주성회장님 입금	10,000,000	10,000,000
이자수입	12,720	예금이자	12,720	9,770
정기총회	2,980,760	정기총회MG인재개발원숙박비환불	2,980,760	2,980,760
찬조금	5,100,000	정기총회 찬조금 평택연합회	100,000	100,000
		중앙회 이주성회장 집회 찬조금	5,000,000	5,000,000
수입합계	55,381,773		33,125,030	20,014,390

<지출부>

적용기간(2017.12.19~2018.02.26)

계정과목	금 액	적 요	1월	2월
상근임원	7,055,000	회장판공비	7,055,000	3,535,000
후원	945,000	회장판공비에서 400,000원 차감후 개인 이름(이주성)으로후원	0	
		황희 국회의원	200,000	100,000
		김철민 국회의원	200,000	100,000
		이언주 국회의원	100,000	100,000
		조정식 국회의원	300,000	200,000
		공로패(경기화성) 판공비에서 차감	145,000	65,000

사무처장	6,166,200	급여	5,435,530	2,724,010	2,711,520
		상여금	0		
		퇴직금	0		
		통신비지원	176,000	88,000	88,000
		4대보험(근로자분)	502,810	250,060	252,750
		근로소득세	47,160	23,580	23,580
		지방소득세(특별징수)	4,700	2,350	2,350
실장	3,260,000	급여	3,107,920	1,554,500	1,553,420
		상여금	0		
		퇴직금	0		
		4대보험(근로자분)	152,080	75,500	76,580
4대보험	766,030	사업자 납부분	766,030	380,080	385,950
통신비	199,630	전화 및 팩스 사용료	181,060	122,070	58,990
		입출금 알림서비스 수수료	4,800	2,400	2,400
		문자충전 및 인터넷팩스사용료	0		
		우편발송 및 택배	13,770	13,770	
사무용품	172,500	복사용지 외	118,800		118,800
		문서화일 외	53,700	53,700	
공로패	480,000	울산연합회 공로패2개 제작	160,000	160,000	
		대구연합회 공로패1개 제작	80,000	80,000	
		대전연합회 공로패1개 제작	80,000		80,000
		경북연합회 공로패2개 제작	160,000		160,000
사무실 관리비	1,177,530	임대료	800,000	400,000	400,000
		관리비(전기)	377,530	185,720	191,810
방송차량 유지비	936,878	방송차 유류비	100,000	100,000	
		회장님 유류비	836,878	396,702	440,176
회장단 회의	200,000	광역시도회장단 회의 및 워크샵 제주도 펜션예약(쁘띠제주빅터)	200,000		200,000
정기총회 워크샵	15,404,180	통기타가수 공연대금	800,000	800,000	
		정기총회 참석실장 KTX예매 천안→대전	9,700	9,700	
		정기총회 준비 중식대-충무국장 사업국장,처장,실장	28,000	28,000	
		정기총회 MG인재개발원(천안) 대관료 및 식대,숙박비 잔금	11,840,000	11,840,000	
		1.3 정기총회 참석 조식 회장외1인	14,000	14,000	
		외부강사 강의료-이창언교수	1,000,000	1,000,000	
		워크샵 비디오 및 사진 촬영비	500,000	500,000	
		고문 김종성 총회 참석비	200,000	200,000	
		정기총회 일회용 치약구입	37,500	37,500	
		책자 및 준비물 배포용 가방구입	184,600	184,600	
		정기총회 일회용 칫솔구입	22,500	22,500	
		가방 묶음용 바인더끈 구매	6,000	6,000	
		정기총회 초대장 반송료-김종성고문	1,630	1,630	
		정기총회 참석자용 커피믹스	41,900	41,900	
		정기총회 참석자용 녹차 외	43,300	43,300	

		정기총회 참석자 명찰300개 구입	52,650	52,650	
		총회 물품운반 다마스요금 대전→천안	55,000	55,000	
		1.2 정기총회 준비 국장단회의 석식대	124,300	124,300	
		1.2 정기총회 준비 국장단회의 숙박비	132,000	132,000	
		1.3 정기총회 준비 국장단회의 조식대	18,000	18,000	
		1.2 국장단회의 석식대-처장	6,100	6,100	
		정기총회용 비상약 구입	23,000	23,000	
		1.3 준비 국장단회의 조식대 처장외3인	24,000	24,000	
		정기총회 공로패 3개 제작(8만원x3개)	240,000	240,000	
사무기구 활동비	5,432,900	12.20 4/4분기 회계 및 업무감사 활동비 - 이동희국장	297,400	297,400	
		12.21 제8차 정기총회 대비 사무기구회의 참석-이동희국장	227,000	227,000	
		12.21 제8차정기총회 대비 사무기구회의 참석-이성일국장	284,500	284,500	
		12.21 제8차 정기총회 대비 사무기구회의 참석-신명철국장	220,000	220,000	
		12.21 제8차정기총회 대비 사무기구회의 참석-이청우국장	251,400	251,400	
		12.21 제8차정기총회 대비 사무기구회의 참석-권영길국장	270,600	270,600	
		1.2-1.4 제8차 정기총회 사전 준비 및 참석 - 이동희국장	783,500	783,500	
		1.2-1.4 제8차 정기총회 사전 준비 및 참석 - 이성일국장	472,600	472,600	
		1.2-1.4 제8차 정기총회 사전 준비 및 참석 - 신명철국장	480,000	480,000	
		1.2-1.4 제8차 정기총회 사전 준비 및 참석 - 이청우국장	444,000	444,000	
		1.2-1.4 제8차 정기총회 사전 준비 및 참석 - 권영길국장	695,800	695,800	
		1.2-1.4 제8차 정기총회 사전 준비 및 참석 - 김기호국장	786,100	786,100	
		2.20 전남장흥 회장 이취임식 참석 -이동희국장	220,000		220,000
사무기구	150,000	12.21 국장단회의 석식대	150,000	150,000	
대형기종 조직강화 위원회	1,746,400	2.8 대형기종조직강화위원회 1차회의 참석 활동비 위원장 공재욱	220,400		220,400
		2.8 대형기종조직강화위원회 1차회의 참석 활동비 간사 허상헌	295,400		295,400
		2.8 대형기종조직강화위원회 1차회의 참석 활동비 위원 박현수	356,200		356,200
		2.8 대형기종조직강화위원회 1차회의 참석 활동비 위원 남상인	301,300		301,300
		2.8 대형기종조직강화위원회 1차회의 참석 활동비 위원 이종우	244,400		244,400

		2.8 대형기종조직강화위원회 1차회의 참석 활동비 위원 마기복	328,700		328,700
업무 추진비	2,342,020	중앙회장 울산회장 이취임식 참석 KTX 예매 광명→울산	71,800	71,800	
		중앙회장 울산회장 이취임식 참석 KTX 예매 울산→광명	56,400	56,400	
		울산회장 이취임식 참석 회장 주차비	12,000	12,000	
		12.20 경기 고양협회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참석 처장교통비	94,200	94,200	
		12.21 제8차 정기총회 대비 사무기구 회의 참석 처장교통비	64,500	64,500	
		1.2-1.3 제8차 정기총회 사전 준비 및 행사참석 처장교통비	32,600	32,600	
		1.4 경기 안성협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처장교통비	42,500	42,500	
		대구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KTX예매-회장 광명→동대구	57,800	57,800	
		1.15 충북연합회 정기총회 및 워크숍 참석 처장교통비	29,900	29,900	
		1.21 대한펄프카협회 제5회 정기총회 참석 처장교통비	66,100	66,100	
		1.22 고정유형자산 처분 과세관련 공청회 참석 처장교통비	85,400	85,400	
		김천연합회 공정위 과태료 관련 이주성 회장 방문 KTX예매 동대구→광명	53,700		53,700
		제주정기총회 참석 회장님 공항주차요금	15,000		15,000
		2.8-2.9 제주도 정기총회 참석 회장 왕복항공권 예매 김포↔제주	110,600		110,600
		17년 하반기(17.7.1~17.12.31)중앙회 이주성회장 도로 통행료	712,420		712,420
		1.30 충남연합회 전체 임원진 간담회 참석 처장교통비	41,600		41,600
		2.1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회장단 긴급회의 참석 처장 교통비	72,500		72,500
		조직국장 김기호 장흥회장 취임식 참석 KTX예매 회장,충무국장(광명→순천)	114,000		114,000
		조직국장 김기호 장흥회장 취임식 참석 KTX예매 회장,충무국장(순천→광명)	129,600		129,600
		중앙회 조직국장 김기호 장흥회장 취임식 참석 주차요금	9,000		9,000
		2.7 대전,충남,충북연합회 임원진 3차회의 참석 처장교통비	20,800		20,800
		2.8 대형기종조직강화위원회 제1차 참석 처장교통비	82,600		82,600
		2.20 김기호 조직국장 장흥회장 이.취임식 참석 처장교통비	92,800		92,800
		회장단회의 참석 이주성회장 항공권예매 김포↔제주 강원연합회에서 예매	139,600		139,600

		부산연합회 전임회장단회의 참석 KTX예매 - 회장 광명→부산	67,300		67,300
		부산연합회 전임회장단회의 참석KTX예매 - 회장 부산→광명	67,300		67,300
TF,연대 대외사업	849,400	12.28 건설기계사업자TF 송년모임 참석 수석활동비	340,400	340,400	
		1.19 대한펄프카협회 정기총회 축하 쌀 화환 -안산문화예술의전당	69,000	69,000	
		2.9 전국굴삭기조종사노동조합 업무협의 참석 처장교통비	55,800		55,800
		2.12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모임 임시의 참석 처장교통비	72,000		72,000
		2.19 사단법인 서류 접수 처장 교통비	12,200		12,200
		2.23 건설기계사업자모임(건설기계기종 단체)회비첫달 30만원 이후매월10만원	300,000		300,000
감사 활동비	766,100	12.20 4/4분기 회계 및 업무감사 참석 (대전중앙회)-황용진	282,100	282,100	
		1.3 제8차 정기총회 참석 - 황용진감사	264,000	264,000	
		1.4 제8차 정기총회 참석 - 황용진감사	220,000	220,000	
복리후생	2,427,500	경조사 화환(위크샵,총회,체육대회 등)	635,000	319,000	316,000
		직원 중식대	502,500	339,500	163,000
		설 명절 선물(곶감) 광역시도 회장 17 명, 중앙회임원 7명, 감사2명 처장,실장 2명, 고문2명(35,000원x30명)	1,190,000		1,190,000
		중앙회감사 황용진 모친상 조의금	100,000		100,000
잡비	90,700	음료, 종이컵 외	0		
		생수	24,000		24,000
		냉온수기 살균소독	12,000		12,000
		커피, 차구입	54,700		54,700
수수료	1,550	후원 송금수수료	1,250	250	1,000
		KTX승차권 예매 환불 수수료	300	300	
지출합계	50,569,518		50,569,518	33,827,272	16,742,246
잔액	4,812,255				

3) 2018년 2/4분기 수입 지출 회계보고

<수입부>

적용기간(2018.02.27~2018.05.31)

계정과목	금 액	적 요	3월	4월	5월
전월이월	4,812,255	0			
중앙회비	198,445,000	강원연합회	15,000,000	10,000,000	5,000,000
		경기연합회	61,770,000	30,000,000	31,770,000
		경남연합회	10,000,000	5,000,000	5,000,000
		경북연합회	12,000,000		12,000,000
		광주연합회	9,300,000	9,300,000	

		대구연합회	11,100,000			11,100,000
		대전연합회	6,585,000		3,585,000	3,000,000
		부산연합회	5,250,000			5,250,000
		서울연합회	0			
		울산연합회	3,090,000	2,000,000		1,090,000
		인천연합회	3,000,000			3,000,000
		전남연합회	32,640,000	9,150,000	8,715,000	14,775,000
		전북연합회	3,000,000	3,000,000		
		제주연합회	0			
		충남연합회	11,490,000	5,520,000	5,970,000	
		충북연합회	14,220,000		14,220,000	
기타수입	63,700	우체국개시백	63,700	1,800	34,580	27,320
이자수입	64,940	예금이자	64,940	6,110	22,850	35,980
집회투쟁 기금	33,220,960	사단법인인가촉구집회투 쟁기금-광역시도전직 회장단(회장-백영택,총무 -이성호,이승원,전창주 이석구,김이용,권영국,김 기원,박용호,백태성 권영덕,백옥균,길기종)	1,000,000	1,000,000		
		사단법인인가촉구집회투 쟁기금-중앙회이주원수석	1,000,000	1,000,000		
		사단법인인가촉구집회투 쟁기금-우제식-화성동부 지회장	100,000	100,000		
		사단법인 인가 촉구 집회 투쟁기금-박상욱-제주회 원	50,000	50,000		
		사단법인 인가 촉구 집회 투쟁기금-이영섭회원	100,000	100,000		
		사단법인인가촉구집회투 쟁기금-전남장흥연합회이 은철회원	1,000,000	1,000,000		
		사단법인 인가 촉구 집회 투쟁기금-김포 김학규회 원	300,000	300,000		
		사단법인인가촉구집회투 쟁기금-경기연합회최창섭 회장	1,000,000	1,000,000		
		사단법인인가촉구집회투 쟁기금-경북연합회공재욱 회장	1,000,000	1,000,000		
		사단법인인가촉구집회투	500,000	500,000		

	쟁기금-시추조사협회정일 문회장				
	사단법인인가촉구집회투 쟁기금-전남장성연합회조 성엽회원	200,000	200,000		
	사단법인인가촉구집회투 쟁기금-중앙회최춘식사무 총장	1,000,000	1,000,000		
	사단법인인가촉구집회투 쟁기금-제주연합회전임김 호열회장	500,000	500,000		
	사단법인인가촉구집회투 쟁기금-인천연합회박창근 회장	1,000,000	1,000,000		
	사단법인인가촉구집회투 쟁기금-울산연합회운영기 회장	1,000,000	1,000,000		
	사단법인인가촉구집회투 쟁기금-전남장흥연합회 (김기호회장100만원,사무 국장이철30만원, 6w협의 회장오재식30만원,이종인 회원30만원, 정대승회원 20만원,김광옥회원20만 원,김태완6w 협의회총무 10만원,최태성회원30만 원, 김재성감사10만원,위 성인회원10만원)	3,000,000	3,000,000		
	사단법인인가촉구집회투 쟁기금- 강원도18개시군 연합회일동	1,700,000	1,700,000		
	사단법인인가촉구집회투 쟁기금-강원도연합회임원	700,000	700,000		
	사단법인인가촉구집회투 쟁기금-경기안산시연합회	1,000,000	1,000,000		
	사단법인 인가 촉구 집회 투쟁기금-대한중공업	1,000,000	1,000,000		
	사단법인 인가 촉구 집회 투쟁기금-삼척신성중기	100,000	100,000		
	사단법인인가촉구집회투 쟁기금-전국지게차연합회	1,000,000	1,000,000		
	사단법인 인가 촉구 집회 투쟁기금-경남하동협의회	200,000	200,000		
	사단법인 인가 촉구 집회	200,000	200,000		

	투쟁기금-경남밀양협의회				
	사단법인 인가 축구 집회 투쟁기금-경남김해협의회	200,000	200,000		
	사단법인 인가 축구 집회 투쟁기금-경남고성협의회	200,000	200,000		
	사단법인 인가 축구 집회 투쟁기금-경남창원협의회	200,000	200,000		
	사단법인인가축구집회투 쟁기금-중앙회이주성회장	1,870,960	1,870,960		
	사단법인 인가 축구 집회 투쟁기금-대구연합회	1,000,000	1,000,000		
	사단법인 인가 축구 집회 투쟁기금-건설불러중기	500,000	500,000		
	사단법인 인가 축구 집회 투쟁기금-대전연합회	1,000,000	1,000,000		
	사단법인 인가 축구 집회 투쟁기금-김규섭회원	100,000	100,000		
	사단법인인가축구집회투 쟁기금-순천연합회정병 수,김인호회원	1,000,000	1,000,000		
	사단법인 인가 축구 집회 투쟁기금-부산연합회	1,000,000	1,000,000		
	사단법인 인가 축구 집회 투쟁기금-전남연합회	1,000,000	1,000,000		
	사단법인 인가 축구 집회 투쟁기금-(주)광릉	1,000,000	1,000,000		
	사단법인 인가 축구 집회 투쟁기금-03황병록회원	100,000		100,000	
	사단법인인가축구집회투 쟁기금-김재일자유로중기	500,000		500,000	
	사단법인 인가 축구 집회 투쟁기금-전북연합회	1,000,000		1,000,000	
	사단법인 인가 축구 집회 투쟁기금-제주연합회	1,000,000		1,000,000	
	사단법인인가축구집회투 쟁기금-충남연합회전임회 장김명배	100,000		100,000	
	사단법인인가축구집회투 쟁기금-충남연합회 사무 처장 오수환	200,000		200,000	
	사단법인인가축구집회투 쟁기금-중앙회전임감사이 준배	200,000		200,000	
	사단법인인가축구집회투	1,200,000		1,200,000	

		쟁기금-충남연합회				
		사단법인 인가 축구 집회 투쟁기금-충북연합회	1,000,000		1,000,000	
		사단법인 인가 축구 집회 투쟁기금-전남연합회	400,000			400,000
차입금	10,000,000	중앙회 잔고부족으로 이 주성회장님 차입금	10,000,000	10,000,000		
집회	2,970,000	강원연합회 대형태극기 구매 대납 입금	70,000	70,000		
		집회굴삭기지원추레라운 반비-안산순춘용회장 회장단회의미결로인한재 입금	1,000,000			1,000,000
		집회굴삭기지원추레라운 반비-인천박창근회장 회장단회의미결로인한재 입금	1,900,000			1,900,000
수입합계	244,764,600		244,764,600	96,768,870	52,647,430	95,348,300

<지출부>

적용기간(2018.02.27~2018.05.31)

계정과목	금액	적 요		3월	4월	5월
판공비	7,200,000	회장	7,200,000	0	3,700,000	3,500,000
후원	4,800,000	회장급여에서 차감 후 개인이름(이주성)으로 후원	0			
		이언주 국회의원	1,400,000	1,000,000	100,000	300,000
		민홍철 국회의원	200,000		100,000	100,000
		김현미 국회의원	200,000		100,000	100,000
		사단법인 인가축구 집회찬조금	1,870,960	1,870,960		
		팀장급여(연합회 입사일 전부터 집회 시작시까지 보전)	1,129,040	1,129,040		
처장	10,773,800	급여	7,943,140	2,534,390	2,704,380	2,704,370
		통신비지원	264,000	88,000	88,000	88,000
		상여금	1,500,000	1,500,000		
		퇴직금	0			
		4대보험(근로자분)	758,250	252,750	252,750	252,750
		근로소득세(연말정산 포함)	280,300	202,340	38,980	38,98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연말정산포함)	28,110	20,320	3,890	3,900
팀장	6,799,990	급여	5,815,350	1,370,960	2,211,830	2,232,560
		통신비지원	224,250	48,250	88,000	88,000
		상여금	472,220	472,220		
		퇴직금	0			
		4대보험(근로자분)	225,080		12,580	212,500
		근로소득세	57,360		7,410	49,950

		지방소득세(특별징수)	5,730		740	4,990
실장	5,711,150	급여	4,705,230	1,553,420	1,591,960	1,559,850
		상여금	815,000	815,000		
		퇴직금	0			
		4대보험(근로자분)	190,920	76,580	76,580	37,760
4대보험	1,397,490	사업자 납부분	1,397,490	385,950	424,840	586,700
통신비	276,730	전화 및 팩스 사용료	212,030	64,480	69,740	77,810
		입출금알림서비스 수수료	7,200	2,400	2,400	2,400
		문자충전 및 인터넷팩스사용료	55,000	55,000		
		우편발송 및 택배 쿼	2,500	2,500		
도서인쇄비	383,000	명함제작-부회장, 총장, 팀장, 실장	103,000	80,000		23,000
		도장(사단법인 발기인)	60,000		60,000	
		아크릴명찰 제작-부회장, 총장, 팀장	90,000	90,000		
		대봉투 제작	130,000		130,000	
사무용품비	86,400	복사 용지외	0			
		파일 구입	70,900	70,900		
		홀더와 구입	15,500		15,500	
비품구입비	644,900	문서 인쇄용 컬러프린트	215,000	215,000		
		FAX구입	350,000		350,000	
		자료 백업용 외장하드 구입	79,900			79,900
소모품비	260,000	이사회, 총회, 회의용 볼펜 (전건연 인쇄)1000개	260,000	260,000		
차입금상환	20,000,000	중앙회 잔고부족 이주성회장 차입금상환	20,000,000		20,000,000	
사무실관리비	1,526,860	임대료	1,200,000	400,000	400,000	400,000
		관리비(전기)	326,860	146,060	98,850	81,950
방송차량유지비	4,520,094	자동차보험료(72모4298그랜드스타렉스 방송차)17.8.24-18.8.24	0			
		방송차 유류비	1,552,000		715,000	837,000
		회장님 유류비	817,294	185,000	360,688	271,606
		방송차 하이패스카드 충전	980,000	500,000		480,000
		방송차 전면 선팅외	610,000	610,000		
		방송차 수리 및 부품교체	115,000	50,000		65,000
		자동차세(72모 4298 그랜드스타렉스 방송차)	0			
		방송차 과태료 (속도위반, 주차위반, 끼어들기)	148,000		148,000	
		방송차 종합검사비 및 준비물품	76,000		76,000	
		도로통행료 및 주차요금	221,800		29,900	191,900
광역시도 회장단워크 샵	1,023,120	2.27 광역시도회장단회의 및 워크샵 (쁘띠제주빅터)렌터카	53,500	53,500		
		2.27 광역시도회장단회의 및 워크샵 (쁘띠제주빅터)렌터카	22,000	22,000		
		2.27 광역시도회장단회의 및 워크샵 (쁘띠제주빅터)중식대	143,000	143,000		
		2.27 광역시도회장단회의 및 워크샵	34,620	34,620		

		(쁘띠제주빅터)음료및다과				
		2.28 광역시도회장단회의 및 워크샵 (쁘띠제주빅터)조식대	120,000	120,000		
		2.28 광역시도회장단회의 및 워크샵 (쁘띠제주빅터)중식대	484,000	484,000		
		2.28 광역시도회장단회의 및 워크샵 (쁘띠제주빅터)렌터카	26,000	26,000		
		2.27 광역시도회장단회의 및 워크샵 (쁘띠제주빅터) 석식대	140,000	140,000		
광역시도 회장단회의	306,100	4.9 광역시도 회장단회의 중식대	128,000		128,000	
		5.16 광역시도 회장단회의 중식대	163,000			163,000
		5.16 광역시도 회장단회의 음료	15,100			15,100
사무총장할 동비	1,559,700	4.9 제2차 광역시도 회장단 회의 참석 비	274,500		274,500	
		4.25 건설기계사업자 협의체 국토부회 의 참석비	336,900		336,900	
		5.2 건설기계사업자 협의체 제3차 회 의 참석비	336,900			336,900
		5.11 건설기계사업자 협의체 제4차 회 의 참석비	336,900			336,900
		5.16 제3차 광역시도회장단회의 참석 비	274,500			274,500
사무기구	1,568,400	3.7 18년 1/4분기 정기이사회 참석- 이동희국장	276,300	276,300		
		3.7 18년 1/4분기 정기이사회 참석- 이성일국장	233,400	233,400		
		3.7 18년 1/4분기 정기이사회 참석-신 명철국장	265,700	265,700		
		3.7 18년 1/4분기 정기이사회 참석-이 청우국장	238,800	238,800		
		3.7 18년 1/4분기 정기이사회 참석-권 영길국장	227,800	227,800		
		3.7 18년 1/4분기 정기이사회 참석-김 기호국장	326,400	326,400		
TF,연대 대외사업비	1,979,020	2.26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모임 출범 식 참석 차량교통비	70,600	70,600		
		3.23 건설기계사업자 단체모임 (27개 건설기계 기종단체)회비	100,000	100,000		
		4.9 TF회의 설명자료 산다케이스 구입	12,000		12,000	
		4.9 건설기계사업자 단체모임 2차회의 참석 차량교통비	72,200		72,200	
		4.10 TF회의 참여시 휴대용 녹음기 구 입	140,000		140,000	
		4.25 건설기계사업자 협의체 국토교통 부 회의참석비-이주원수석	321,900		321,900	
		4.25 건설기계사업자 협의체 국토교통 부 회의참석 차량교통비	75,300		75,300	

		4.25 건설기계사업자 단체모임 (27개 건설기계 기종단체)회비	100,000		100,000	
		4.25 건설기계사업자 협의회 국토부회의 참석 조식대	10,220		10,220	
		5.2 건설기계사업자 협의회 국토부회의 참석 중식대-회장,총장,팀장	31,500			31,500
		5.2 건설기계사업자 협의회 제3차회의 참석비-이주원수석	321,900			321,900
		4.27 사단법 신청서류 접수(3차)국토부 처장교통비	16,200			16,200
		5.8 건설기계 사업자 협의회 국토부 공문전달 처장교통비	16,200			16,200
		5.11 건설기계사업자 협의회 회의 조식대	40,000			40,000
		5.11 건설기계사업자 협의회 회의 커피숍	26,600			26,600
		5.11 건설기계사업자 협의회 회의 중식대	105,000			105,000
		5.11 건설기계사업자 협의회 회의 커피숍	6,000			6,000
		5.11 건설기계사업자 협의회 제4차회의 참석비-이주원수석부회장	321,900			321,900
		5.10 건설기계사업자 협의회 최종합의문 협의 처장교통비	16,200			16,200
		5.11 건설기계사업자 협의회 제4차회의 참석 처장교통비	75,300			75,300
		5.25 건설기계사업자 모임 회비	100,000			100,000
이사회	696,000	1/4분기 정기이사회 생수구입	12,000	12,000		
		1/4분기 정기이사회 중식대	288,000	288,000		
		1/4분기 이사회 회의장소 대여료	396,000	396,000		
감사활동비	1,424,200	3.2 18년 1/4분기 업무 및 회계감사-이승원감사	285,900	285,900		
		3.2 18년 1/4분기 업무 및 회계감사-황용진감사	282,900	282,900		
		3.7 18년 1/4분기 정기이사회 참석-이승원감사	290,600	290,600		
		4.9 제2차 광역시도 회장단회의 참석비-황용진감사	282,400		282,400	
		5.16 제3차 광역시도회장단회의 참석비-황용진감사	282,400			282,400
대형기종위원회 활동비	1,388,300	4.24 대형기종조직강화위원회 2차회의 참석 활동비 위원장공재옥	302,000		302,000	
		4.24 대형기종조직강화위원회 2차회의 참석 활동비 간사허상현	269,200		269,200	
		4.24 대형기종조직강화위원회 2차회의 참석 활동비 위원남상인	242,900		242,900	

		4.24 대형기종조직강화위원회 2차회의 참석 활동비 위원이종우	284,300		284,300	
		4.24 대형기종조직강화위원회 2차회의 참석 활동비 위원마기복	289,900		289,900	
업무추진비	619,650	4.3 경북파업 출장교통비(택시)-팀장	3,200		3,200	
		4.3 경북파업 출장교통비(기차)-팀장	30,400		30,400	
		4.3 경북파업 출장교통비(기차)-팀장	35,000		35,000	
		4.3 경북파업 출장교통비(택시)-팀장	20,720		20,720	
		4.10 사단법인인가 관련 서울출장 주 차비-팀장	1,200		1,200	
		4.11 사단법인인가 관련 서울출장 주 차비-팀장	500		500	
		4.11 사단법인인가 관련 서울출장 주 차비-팀장	800		800	
		4.12 경북파업출장 저녁식대-팀장	8,500		8,500	
		4.12 사단법인인가 관련 서울출장 주 차비-팀장	4,000		4,000	
		4.18 사단법인관련 국토부와 회의 커 피숍	20,500		20,500	
		4.18 사단법인관련 국회의원실 방문 음료구입	10,800		10,800	
		4.18 사단법인관련 국회의원실 방문 음료구입	27,000		27,000	
		4.18 사단법인관련 국회의원실 방문 주차요금	2,100		2,100	
		4.20 사단법인인가 발기인 서명받기위 해 팀장 서울출장주차비	12,500		12,500	
		4.20 사단법인 인가 발기인서명 받기 위해 팀장 부산출장커피	4,500		4,500	
		4.20 사단법인인가 발기인 서명받기 위해 팀장 출장음료 구입	26,580		26,580	
		4.20 회장,부회장 사단법인인가 관련 청와대방문 음료	3,600		3,600	
		4.20 회장,부회장 사단법인 인가관련 청와대방문 음료	1,700		1,700	
		4.20 회장,부회장 사단법인 인가관련 청와대방문 중식대	11,300		11,300	
		4.23 사단법인인가 관련 팀장 국회출 장 주차비	3,700		3,700	
		4.10-4.15 집회현장 천막 이상 유무확 인 처장교통비	64,800		64,800	
		4.18 세종경찰서 집회 신고서 접수 처 장교통비	19,900		19,900	
		4.30 업무협의 대한중공업방문 음료구 입-팀장	16,000		16,000	
		5.1 광주연합회 회장이,취임식 및 체육	18,000			18,000

		대회 참석 조식대-회장,사무총장,팀장				
		5.1 광주 회장이,취임식 및체육대회 참 석 음료-회장,총장,팀장	9,350			9,350
		5.1 광주연합회 회장이,취임식 및체육 대회참석 중식대-회장,팀장	14,000			14,000
		5.4 건설기계 기종별 회의 중식대	42,000			42,000
		5.4 건설기계 기종별 회의 커피	5,000			5,000
		5.15 대전연합회방문 수박구입-팀장	18,000			18,000
		5.17 이언주국회의원 공청회 참석 커피-회장,팀장	10,800			10,800
		5.17 이언주국회의원 공청회 참석 조 식대-회장,팀장	14,000			14,000
		5.17 이언주국회의원실 방문 음료수 구입	21,600			21,600
		5.17 이언주국회의원 공청회 참석 주 차비	24,000			24,000
		5.17 이언주국회의원 공청회 참석 커피 피습	11,400			11,400
		5.17 이언주국회의원 공청회 참석 커피 피습	16,500			16,500
		5.17 이언주국회의원 공청회 참석 음 료	5,300			5,300
		5.17 이언주국회의원 공청회 참석 중 식대-회장,팀장	12,000			12,000
		5.18 홍성 오양학재무국장 사고처리 현장담당자와 커피-팀장	9,000			9,000
		5.16 제3차 회장단회의 긴급회의장소 변경 차량교통비	16,200			16,200
		5.25 홍성시망사고 처리 조식대-팀장	7,000			7,000
		5.25 홍성시망사고 처리 음료-팀장	2,000			2,000
		5.26 수원연합회 사망사고 처리 미팅 중식대	11,000			11,000
		5.26 수원연합회 사망사고 처리 미팅 주차요금	4,700			4,700
		5.26 수원연합회 사망사고 처리 미팅 커피	12,000			12,000
		5.26 수원연합회 사망사고 처리 미팅 음료	6,500			6,500
사단법인집 회	29,945,333	[별도] 첨부자료 참조				
복리후생비	1,497,670	경조사 화환 및 현수막(총회, 체육대회 행사등)	573,000	54,000	324,000	195,000
		직원 중식대	924,670	179,500	401,770	343,400
잡 비	246,460	음료, 종이컵 외	70,500		32,000	38,500
		생수	48,000		24,000	24,000
		냉온수기살균소독	12,000		12,000	

		커피구입	65,100		17,500	47,600
		화장실 방향제 구입	13,600		13,600	
		쓰레기봉투	19,900			19,900
		폐가전 스티커	3,000			3,000
		물티슈	14,360		14,360	
지출합계	106,634,367		106,634,367	36,258,183	41,661,608	28,714,576
잔액	142,942,488					

보고5**건설기계 사업자 협의체 결과보고****1) 추진배경**

－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발전방안 모색 필요성 대두

2) 협의체 구성인원

No	기관명	직책	성명	비고
1	국토교통부	국장	김일평	
2	“	과장	박병석	
3	대한건설협회	실장	최상호	
4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장	김영승	
5	대한건설기계협회	부회장	김태균	
6	전국건설기계연합회	회장	이주성	
7	전국지게차연합회	회장	강성조	
8	대한펌프카협회	회장	전항배	
9	건설산업연구원	경영학박사	김민형	
10	을지대학교	공학박사	이명구	
11	건설기계안전연구원	건설기계기술사	장인섭	

3) 협의회 회의 진행경과

No	날 짜	참석인원	차수/세부내용	장소
1	4월 10일 화	10명 전원 참석	제1차 회의	서울) 한강 홍수 통제소
2	4월 18일 수	9명 참석	제2차 회의	
3	5월 2일 수	8명 참석	제3차 회의	
4	4월 23일 월	대건협 전 임원	국토부 주관 개별면담 의견수렴	
5	4월 24일 화	대건협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6	4월 25일 수	전건연 회장, 수석, 사무총장		
7	4월 30일 월	펌프카, 레미콘, 포장장비 등		
8	5월 11일 금	국토부, 전건연, 대건협	제4차회의 합의	

4) 협의체 합의결과

합 의 서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표자 : 전 기 호 회장

○전국건설기계연합회

대표자 : 이 주 성 회장

○대한펌프카협회 (건설기계기종별협의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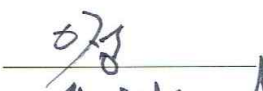
대표자 : 전 황 배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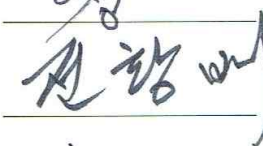
상기 3인은 각 단체를 대표하여 2018년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체” 운영 결과에 따라 마련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수용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붙임 :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2018년 5월 11일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전 기 호 

전국건설기계연합회 회장 이 주 성 

대한펌프카협회 회장 전 황 배 

입회자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I.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 대한건설기계협회 개선 방향 제시
- ◇ 기종·규모별 협의회 활성화 및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추진배경

- 전국건설기계연합회(회장 이주성)에서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신청('18.2.19) 후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촉구 집회('18.3.5~4.5)
- 최종협의 결과('18.4.3),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회” 운영(안)을 수용함에 따라,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추진경과

- 정부·기계협회·임의단체·장비임차관련단체·학계·전문가 등(10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의 개최
 - 1차 4.10(화), 15:30, 한강홍수통제소, 구성원 10명 전원참석
 - 2차 4.18(수), 10:00, 한강홍수통제소, 구성원 9명 참석
 - 3차 5. 2(수), 13:00, 한강홍수통제소, 구성원 8명 참석
- 대한건설기계협회 및 임의단체 등과 개별 면담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협의
 - 대한건설기계협회 전 임원(부회장, 기종별협의회장, 4.23)
 - 대한건설기계협회 현 임원(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등, 4.24)
 - 전국건설기계연합회(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등, 4.25)
 - 건설기계 기종별 사업자단체(펌프카, 믹서트럭, 포장장비 등, 4.30)

Ⅱ. 협의체 및 임의단체 주요 의견

□ 협의체 논의사항

○ 건설기계 임의단체 주요 요구사항

- ① 건설기계 기종별, 개별.연명사업자를 대변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정단체 설립 인가(전국건설기계연합회)
- ②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운영 구조 개선과 건설기계 임의단체의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펌프카 등 기종별 임의단체)

○ 협의체 주요 의견

- 발단이 대한건설기계협회의 구조.운영의 문제이므로, 기종별 사업자 등 임의단체 모두를 협회에서 이끌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 등 실사업자의 입장 및 의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창구 마련 필요
- 모든 임의단체의 사단법인 설립은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신중한 검토 및 필요시 난립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

Ⅲ.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 대한건설기계협회 개선 방향

- 모든 대여사업자가 참여토록 대승적 차원의 구조* 개혁

* 회원 자격 조건, 대의원 및 이사회 구성비(회원명부, 회비 납부실적 비율) 합리적 개선 등

- 건설기계 27개 기종, 개별.연명사업자 모두가 건설기계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기존 대의원 구성 등 전면 개편

* 협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토록 지도·감독

□ 건설기계 기종·규모별 협의회 활성화

- (협회 내) 건설기계 기종별 사업자 및 개별.연명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기종·규모별 협의회 확대 구성·운영

- 27개 기종, 2개 규모(일반/개별.연명)별 협의회를 두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비영리 법인) 기종·규모별 협의회에서 ‘민법’ 및 ‘우리부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에 따라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적극 검토

- 현재의 기종·지역·규격별 100여개 임의단체를 모두 허가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전국단위로 구성된 2개 규모(일반/개별.연명) 및 건설기계 27개 기종으로 한정

□ 회원의 자격 및 관리

- (현재) 정관 제7조제1호에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자로 규정되어, 연명등록사업자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음
- ⇒ (개선방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연명 등록사업자를 포함한다”고 명확히 하고, 본인(법인) 명의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자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업자가 회원임을 명시
- (현재) 회원명부 관리 규정이 없음
- ⇒ (개선방안) 협회 회원에 대한 명부를 관리하도록 정관 제8조에 명시

□ 임원의 피선거권 등

- (현재) 정관 제14조의2에서 회장 입후보 자격을 선거일 현재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협회 회원으로 있는 자로 규정하고
- 정관 제16조에 협회장 임기는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규정
- ⇒ (개선방안) 기종별, 개별사업자도 회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회장 입후보 자격을, 선거일 공고 현재 협회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건설기계 대여사업을 영위한 자로 완화하고, 회장의 연임을 제한할 필요

□ 대의원 구성

- (현재) 정관 제21조에서 대의원을 200명으로 규정하고, 대의원은 시·도회별 선출하되, 일반대여업, 개별대여업, 연명등록자가 안배되도록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성비율을 이사회(총회에서 선출)에서 정하도록 규정
- 대의원 선출 규정 제5조제2항에 대의원 구성 비율은 일반대여업 50%, 연명(개별 포함)대여업 50%로 규정
- ⇒ (개선방안) 대의원 구성비율을 기종·규모별 협회회의 협회 가입 회원수 (또는 회비납부실적)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정비(예, 400명당 1대의원). 대의원 추천 권한을 기종·규모별 협회회의에 부여

참고 2

기종·규모별 협의회 활성화(안)

□ 기종·규모별 협의회 구성

- (현재) 정관 제33조의2에 기종별 회원으로 구성된 기종별협의회를 두고, '기종별협의회설치운영규정' 제6조에 기종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총 27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

⇒ (개선방안) 또다른 역차별이나 소외되는 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기계 일반대여사업자 및 개별·연명사업자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완

* 협의회 : 기종별(건설기계 27종), 규모별(일반사업자, 개별·연명사업자)

□ 협의회 권한 부여

- 협회 대의원 추천 권한 및 임대료체납센터 조사원(현 86명) 추천 권한 부여, 협의회 회장은 임대료체납센터 운영위원회 참여
- 각 기종·규모별 협의회 회장은 기계협회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

□ 정책협의회 운영

- 각 기종·규모별 현안사항 청취 및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종·규모별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운영

* 정기, 수시 정책협의회 운영, 필요시 국토부(건설산업과) 참여

□ 비영리 법인 허가

- 기종·규모별로 구성된 협의회(규모 2, 기종 27)에 한해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적극 검토 추진
-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 규격별, 지역별로 운영 중인 임의단체에 대하여는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불허

참고 3

건설기계사업자 관련 임의단체 현황

구분	임의 단체명	대표자	구분	임의 단체명	대표자
전 국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이주성	전 남	해남연합회	김경철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김진회		완도연합회	정계식
	대한펌프카협의회	전항배		장흥연합회	강귀태
	전국포장건설기계연합회	이영남		영암연합회	민경구
	기중기사업자중앙협의회	이광영		함평연합회	김종옥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	신표종		영광연합회	정수명
	공팔굴삭기협의회	이경중		장성연합회	조성엽
	공육굴삭기협의회	고광수		담양연합회	최영호
	03굴삭기협의회	김연천	울 산	울산덤프 연합회	이성진
	텐(10)숫붐협의회	박일석	경 기	경기도기중기협회	이태열
	공팔(08)숫붐협의회	김찬수		공삼굴삭기협의회	김병옥
	대형굴삭기협의회	안용현	충 북	충북도자협회	정구영
	한국유압드릴협의회	강창원		충북건설기계협동조합	김윤호
	전국천공·항타·항발기협의회	최홍관	경 북	포항 대형덤프협회	최용옥
	전국오거협의회	윤석환		포항 굴삭기협회	김현율
	전국항타협의회	박인수		포항 지게차협회	김화수
	대한고압콤팩트중앙협의회	전광욱		전건연경주	김중현
	전국공기압축기협의회	정형근		전건연포항	강신호
	전국지게차연합회	강성조	경 남	경남연합회	최춘식
	시추기조사협회	정일문		고성협의회	제연래
서울	서울자주식굴삭기협의회	김종열		김해협의회	김종안
	서·경·인10굴삭기협의회	박영진		거창협의회	김흥연
	서울건기회	정광훈		남해협의회	이해경
	서울굴삭기연합회	장현옥		창원협의회	김의준
	서울크라샤협의회	송광식		밀양협의회	김재효
부산	남국회	박철규		사천협의회	김대진
	백우회	강호동		산청협의회	이주섭
	은성친목회	강호춘		의령협의회	허남석
	부건회	박윤식		양산협의회	박건현
	페이로더연합회	이중서		진주협의회	강현진
대구	대구 도저연합회	이동길		창녕협의회	윤종규
	대구 영업용지게차협의회	이춘식		통영협의회	하중용
	대구경북도로포장장비연합회	이영우		하동협의회	김철기
전 남	광주대형 굴삭기연합회	최태원		함안협의회	심상남
	도자연협회	문기훈		함양협의회	서평석
	천공기연합	김영희		함천협의회	강지선
	펌프연합	기장주	제 주	경남기중기연합회	정판옥
	덤프연합	우종곤		남원연합중기	김찬보
	기중기연합	강성국		표선굴삭기연합회	최창선
	신안연합회	정해평		백사중기	김제동
	목포연합회	최태훈		금산중기	홍명윤
	순천연합회	김길성		산남6w협의회	오광일
	여수연합회	전문균		서귀포15톤덤프연합회	지영주
	광양연합회	박길주		08서귀동우회	김종우
	나주연합회	조윤철		서귀포시02연합회	양완희
	구례연합회	심인주		제주도굴삭기연합회	김호열
	곡성연합회	김규희		08동부동우회	김남균
	화순연합회	이남열		08노형동우회	고정국
	보성연합회	박형석		중기사랑모임	정영철
	강진연합회	박종욱		애월경영인협의회	송두한
	무안연합회	장유신		한림경영인협의회	고탁관

참고 4

건설기계 사업자 현황

□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 대여·정비·매매·폐기 등 건설기계사업자 완만한 증가 추세

(단위 : 사)

구분	대여업체			정비업체				매매업체	폐기업체
	계	일반	개별	계	종합	부분(D/M)	전문		
'12	12,447	3,578	8,869	932	53	706(602)	173	1,154	303
'13	12,780	3,610	9,170	1,0172	59	764(631)	194	1,219	317
'14	12,913	3,736	9,177	1,075	57	799(631)	219	1,279	324
'15	13,194	3,861	9,333	1,144	92	813(662)	239	1,322	326
'16	13,491	3,964	9,526	1,208	115	824(692)	269	1,435	326
'17	13,797	4,074	9,723	1,358	151	899(730)	308	1,527	337

□ 시도별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단위: 개)

구분 시·도별	대여업체			정비업체				(D/M) 정비	매매업체	폐기업체
	계	일반	개별	계	종합	부분	전문			
계	13,797	4,074	9,723	1,358	151	899	308	730	1,527	337
서울	3,640	667	2,973	6	0	4	2	4	196	0
부산	737	287	450	27	6	17	4	27	57	6
대구	502	146	356	30	6	16	8	8	77	8
인천	305	125	180	68	8	37	23	55	77	7
광주	144	128	16	31	7	18	6	23	97	6
대전	72	58	14	17	4	10	3	12	24	6
울산	103	78	25	30	2	19	9	28	26	8
세종	59	32	27	9	0	8	1	4	4	3
경기	4,693	652	4,041	310	47	191	72	121	262	65
강원	542	249	293	97	5	78	14	63	67	25
충북	307	199	108	143	13	97	33	43	86	27
충남	691	227	464	126	16	85	25	86	109	31
전북	332	188	144	74	5	58	11	46	87	28
전남	669	407	262	80	2	63	15	64	67	35
경북	453	339	114	148	17	91	40	70	135	40
경남	354	245	109	121	12	77	32	64	132	33
제주	194	47	147	41	1	30	10	12	24	9

참고 5

건설기계 등록 현황

구 분	자가용	영업용	관 용	계
총 계	235,203	248,760	3,355	487,318
1. 불도저	434	3,246	47	3,727
2. 굴삭기	47,160	97,117	1,232	145,509
3. 로더	16,886	6,929	544	24,359
4. 지게차	147,868	32,816	993	181,677
5. 스크레이퍼	2	19	0	21
6. 덤프트럭	12,363	47,940	393	60,696
7. 기중기	903	9,737	23	10,663
8. 모터그레이더	23	673	22	718
9. 롤러	867	5,574	58	6,499
10. 노상안정기	1	0	0	1
11. 콘크리트베틙칭플랜트	37	38	0	75
12. 콘크리트피니셔	31	114	0	145
13. 콘크리트살포기	2	2	0	4
14. 콘크리트믹서트럭	4,340	22,152	0	26,492
15. 콘크리트펌프	304	6,670	0	6,974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	3	0	4
17. 아스팔트피니셔	184	777	2	963
18. 아스팔트살포기	39	46	1	86
19. 골재살포기	0	1	0	1
20. 쇄석기	221	188	0	409
21. 공기압축기	932	3,599	0	4,531
22. 천공기	2,256	3,529	0	5,785
23. 향타 및 향발기	90	859	0	949
24. 자갈채취기	15	7	0	22
25. 준설선	79	115	1	195
26. 특수건설기계	76	536	39	651
27. 타워크레인	89	6,073	0	6,162

5) 5월 11일 제 4차 회의 합의사진



토 의 안 건

1. 비영리 법인(사단법인) 설립 건
 - 명칭, 정관제정, 임원, 사업 등
2. 건설기계 작업시간 준수 건
3. 정관 개정 건
4. 기타토의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주문 → 2018년 1월 3일 제8차 정기총회 결의사항, 2018년 5월 11일자 국토교통부 주관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협의체 합의사항에 따라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바랍니다.

1. 영리/비영리법인 비교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별법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있음

▶ 민법 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합자, 합명, 유한, 주식회사가 있음

2. 2018년 5월 11일 합의 결과에 따른 법정단체 설립

① 총 29개 신청 가능

- 건설기계 27개 기종
- 2개 규모(일반/개별·연명)별 협의회

② 6월 11일 협의체 후속조치 실무협의 내용

-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의실 국토부 박균성 사무관 주관
- 명칭(협의회), 사업목적, 사업방향 등은 각 기종간 중복없이 차별화 할 것
- 국토부에 법인 인가서류 제출 전 사전 국토부와 협의하여 진행
- 법인 신청시 회원 공개모집, 발기인, 창립총회 등 절차를 반드시 지킬 것 (회원명부는 기종 간 중복 참여 불가)
- 전국 규모를 증명하는 회원명부 제출, 발기인명부는 본인날인을 할 것
- 5월 11일 협의체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것을 정관에 명시할 것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2. 발기인 성명·주소·약력 / 직업
3. 재산총괄표
 - 1) 주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 2) 업무용 차량 자동차등록증
 - 3) 사무기기 및 기타 재산
 - 4) 예금 잔액 내역 (회비납부 통장)
4. 재산출연증서
5. 2018년 사업 수지 예산서
 - 1) 수입 세부계획
 - 2) 지출 세부계획
6. 사업계획
 - 1) 목적 및 사업별 주요 추진내용
 - 2) 2018년 4대 사업기조
 - 3) 2018년 4대 중점사업
 - 4) 2018년 월별 주요 일정
 - 5) 2018년 4대 중점사업 세부추진 방향
 - 6) 2018년 회의체 운영 계획
 - 7) 각국별 사업계획
7. 2019년 주요 추진사업
8. 사)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정관
 - 1) 건사협-대건협 목적, 사업 비교표
9.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10. 취임승낙서 및 특수관계 부존재확인서
11.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사)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Construction Machinery Individual Council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이 주 성	생년월일 680216-1634819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94-4 306(골드타운)	전화번호 010-3779-4305		
법 인	명칭 사)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화번호 042-523-8050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9 (도마동) 2층			
대표자	성명 이 주 성	생년월일 680216-1634819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94-4 306(골드타운)	전화번호 010-3779-4305		

「민법」 제3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2018년 7월 6일

신청인 이 주 성 (서명 또는 인)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발기인 성명·주소·약력 / 직업

2018년 7월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NO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주요 약력 / 직업	연락처	건설기계 보유기종	서 명
	“총회 당일 참석자에게 받을 예정임”						

<서식 4>

재 산 총 괄 표

2018년 7월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2018년도

단위 : 원

재 산 구 분		수량	평 가 액	설립년도 수익액	취득원인	비고
기 본 재 산						
	계					
보 통 재 산	사무실임대 보증금	1	20,000,000	2015.07.12	첨부1	주 사무실
	차량	1	14,390,000	2013.05.21	첨부2	업무차
	사무기기 및 기타	1식	8,450,000	세무내역 참조	첨부3	사무 집기
	예금 잔액	1	168,011,444	통장잔액 참조	첨부4	회비
	계					
합 계			210,851,444			

확인

사무총장 : 최춘식 인)

[첨부1] 주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2018년 7월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180-17								
토지	지목	대	면적	228.1㎡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분의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면적	493.78㎡	
임대할부분	2층전체							면적	130.05㎡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 이천만원정 (₩20,000,000)								
계약금	금 ※영수자 								
잔금	금 이천만원정 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	금 사십만원정 은 매월 29일 (선불) 지불한다.								
제2조 [종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7년01월01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8년12월31일(24개월) 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 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 되어도중개보수는 지급한다.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존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1.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3.구 계약사항에서 대표자변경 계약임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한다. 2018년 06월 29일									
임대인	주 소 대전 서구 도산로9,(도마동) 3층								
	주민 등록 번호	520401-1449517	전화	010-5457-6575	성명	황규화			
임차인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04번길 23-64, 401호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사업자 등록 번호	314-82-77836	전화	010-3779-4305	성명	이 주성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9 (도마동)								
	사무소 명칭	글로벌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명	서명및날인 	(인)		
	전화 번호	042-586-4477	등록 번호	서구 3246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및날인 	(인)		



KCA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확인

사무총장 : 최준식 인)

[첨부2] 업무용 차량 자동차등록증

2018년 7월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12. 27>

(앞 쪽)

자 동 차 등 록 증					
제 201701-007813 호			최초등록일: 2013년 05월 21 일		
① 자동차등록번호	72도4298	② 차 종	중형 승합	③ 용 도	자가용
④ 차 명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⑤ 형식 및 모델연도	TQCJBE 2014		
⑥ 차 대 번 호	KMJWA37KBEU570823	⑦ 원 동 기 형 식	D4CB		
⑧ 사용본거지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9(도마동)					
소유자 ⑨ 성명(명칭)	전국건설기계연합회(이주성)	⑩ 주 민 (법 인) 등 록 번 호	680216-1634819		
⑪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9(도마동)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7 년 01 월 06 일 ※ 위반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 31일 이내(최고 30만원) ○ 변경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상호, 주소 등(최고 30만원) ○ 상속이전: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범칙금 최고 50만원) ○ 매매이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범칙금 최고 50만원) 이전 대 전 광 역 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 과태료 체납시 매월 가산금 발생(최대77%) ※ 당일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0조1항)					

1. 제 원			
⑫ 제원관리번호	A08-1-00074-0438-2213		
⑬ 길 이	5125 mm	⑭ 너 비	1920 mm
⑮ 높 이	1925 mm	⑯ 총중량	2980 kg
⑰ 배기량	2497 cc	⑱ 정 격 출 력	175/3600 Ps/rpm
⑲ 승 차 정 원	12 명	⑳ 최 대 적재량	0 kg
㉑ 기통수	4 기통	㉒ 연료의 종류	경유 (연비: 9.5 km/L)
2.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㉓ 구 분	㉔ 번호판발급일	㉕ 봉인일	㉖ 발급대행자확인
3. 저당권 등록사실(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을)를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㉗ 구분(설정 또는 말소)	㉘ 일 자		

4. 검사유효기간(검사유효일 전·후 31일)					
㉙ 연월일 부 터	㉚ 연월일 까 지	㉛ 검 사 시행장소	㉜ 주 행 거 리	㉝ 검 체 인 사 화 인	㉞ 검 사 구 분
2015-05-21	2016-05-20		65186		정기검사
2016-05-21	2017-05-20		81535		정기검사
※ 주의사항 : ㉞항 첫째 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비고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세 제외) : 23,207,273 원					

210mm × 297mm(백상지 120g/㎡)

확인

사무총장 : 최준식 인)

[첨부3] 사무기기 및 기타 재산

2018년 7월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No	품 목	대수	종 류	금 액	비 고
1	복사기	1대	신도리코 N600	2,000,000	흑백 전용 복사기
2	컴퓨터1(삼성)	1대	DM300 쿼드코어	600,000	24인치모니터 포함
3	컴퓨터2(조립)	1대	i5-4590 쿼드코어	700,000	32인치모니터 포함
4	컴퓨터3(조립)	1대	i5-2300 쿼드코어	600,000	27인치모니터 포함
5	냉난방기(삼성)	1대	AF40FSM1EE	3,000,000	현재가
6	복합기(브라더)	1대	DCP-T300	150,000	현재가
7	프로젝터 빔	1대	DX881ST(비비텍)	800,000	현재가
8	휴대용 프로젝터	1대	LG전자	600,000	스크린 포함
합 계				8,450,000	

확인	사무총장 : 최춘식 인)
----	---------------

[첨부4] 예금 잔액 내역 (회비납부 통장)

2018년 7월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통예금

예금

전국건설..고객님

09:54 연결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공인인증센터 고객센터 English 고객센터

금융상품 · 예금 · 보험 · 카드 · 금융보안센터 · 전채서비스

스마트보험 · 기업은행

이체

정도금배달

공과금

외환

뱅킹정보관리

부가서비스

비대면서비스

조회

예금

약정계좌조회

?

· 전국건설기계연합회 고객님의 약정이하신 예금계좌입니다.

새로고침

○ 조회시간 : 2018년06월27일 11시10분56초

계좌별칭	계좌번호	개설은행	계좌구분	현재잔액	바로그기
	601161-05-003590	우체국	출금	168,011,444 원	조회 이체

참고사항

- 잔액은 현재시간의 정보이므로 이후 거래가 있으면 [새로고침]버튼을 클릭 하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로 약정한 경우에는 잔액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바로그기의 [조회] [이체]를 선택 하시면 조회 및 이체 메뉴는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별칭은 행정정보관리 > 계좌정보관리 > 출금계좌관리/해지 (계좌별칭관리) 메뉴에서 등록/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상품

e-Postbank 정기예금

e-Postbank 예금

금리안내

조회

● 약정계좌조회

● 전계좌조회

● 거래내역조회

● 계좌관련조회

● 대월계좌조회

● 수표조회

● 인터넷예금수령계좌변경

● 만기계좌조회

● 해약계좌조회

확인

사무총장 : 최준식 인)

<서식 7>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귀하

본인 명의 소유한 다음 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귀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법인에 무상 출연(기부)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5일

위 기부자 이주성 (인)

※ 인감증명서 첨부

== 다 음 ==

<기부재산의 표시>

소재지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9 2층(도마동180-17)	부동산 보증금	1	20,000,000	주사무소
“	업무차량 그랜드스타렉스 (72모4298)	1	14,390,000	업무차량
합계			34,390,000	

확인	사무총장 : 최춘식 인)
----	---------------

<서식 8>

2018년 사업 수지 예산서

2018년 7월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2018년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회비	중앙회비	310,365,000	① 경상비	인건비	147,090,000
				4대보험료	7,400,000
	소 계	310,365,000		운영비	11,800,000
② 출연금				유지비	15,300,000
				회의비	24,100,000
	소 계			활동비	50,100,000
③ 과실소득				사업비	16,600,000
④ 수익 사업				행사비	5,600,000
				복리후생비	12,000,000
	소 계			예비비	2,431,743
⑤ 전기 이월액	전년이월	22,256,743		소 계	292,421,743
			② 퇴직적립금		8,200,000
	소 계	22,256,743	③ 법인세		
⑥ 법인세 환급액			④ 목적 사업비		
⑦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⑧			⑥ 차기이월액		32,000,000
합 계		332,621,743	합 계		332,621,743

확인

사무총장 : 최춘식 인)

1. 수입 세부계획

2018년 7월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1) 수입 및 지출 총괄

항	목	2017년 실적	18년 예산안	세 부 내 용 (산출)
중앙회비 수입 (20,691명)		257,380,689	310,365,000	중앙회비 연 인당 15,000원
전년이월		1,278,547	22,256,743	2017년도 이월금(12/18일)
총 예산액 (수입)		258,659,236	332,621,743	전년도 이월금+중앙회비
총지출 액		236,402,493	300,621,743	18년 예산은 이월금 제외

2) 회원 현황 및 세부 수입내역

N0	지역	2016 회원수	2017 회원수	회원수 증감	2017년 회비납부	회원수 대비(%)	2018년 회비	비고
1	강원	2,210	2,200	-10	26,400,000	100%	33,000,000	
2	경기	2,500	2,500		30,000,000	100%	37,500,000	
3	경남	3,100	3,075	-25	36,900,000	100%	46,125,000	
4	경북	1,800	1,950	+150	23,400,000	100%	29,250,000	
5	대구	1,021	739	-282	8,868,000	100%	11,085,000	
6	충남	1,751	1,751		21,012,000	100%	26,265,000	
7	대전	600	490	-110	5,880,000	100%	7,350,000	
8	부산	370	390	+20	4,680,000	100%	5,850,000	
9	서울	2,324	2,324		27,888,000	100%	34,860,000	
10	울산	206	206		2,472,000	100%	3,090,000	
11	인천	300	350	+50	4,200,000	100%	5,250,000	
12	전북	1,100	770	-330	9,240,000	100%	11,550,000	
13	제주	175	200	+25	2,400,000	100%	3,000,000	
14	충북	818	942	+124	11,304,000	100%	14,130,000	
15	광주	645	620	-25	7,440,000	100%	9,300,000	
16	전남	2,231	2,184	-47	26,208,000	100%	32,760,000	
합 계		21,151	20,691	-460	248,292,000	100%	310,365,000	

확인

사무총장 : 최춘식 인)

2. 지출 세부계획

항	목	2017년예산	2017년실적	18년예산안	세 부 내 용 (산출)
회장	활동비	48,000,000	48,000,000	48,000,000	회장 400만원/월x12회/년
직원급여 (채용직)	사무처장	32,820,000	32,820,000	32,820,000	급여 300만원/월x12회/년
		2,860,000	2,860,000	2,860,000	4대보험 근로자 납부분 9%
		320,000	320,000	320,000	근로소득세
	팀장			27,220,000	급여 250만원/월x12회/년
				2,500,000	4대보험 근로자 납부분 9%
				280,000	근로소득세
	실장	17,160,000	17,160,000	17,870,000	급여 163만원/월x12회/년
		960,000	960,000	960,000	4대보험 근로자 납부분 9%
상여금	사무처장	6,000,000	6,000,000	6,000,000	기본급의 200%
	팀장			5,000,000	
	실장	3,020,000	3,020,000	3,260,000	
퇴직금	사무처장	3,400,000	3,400,000	3,400,000	1년마다 정산
	팀장			2,900,000	
	실장	1,700,000	1,700,000	1,900,000	
4대보험	연금,건강,고용,산재	3,820,000	4,500,000	7,400,000	사업주 납부분 9%
운영비	통신비	1,600,000	1,500,000	1,600,000	전화,문자,팩스요금 외
	처장통신비지원			1,200,000	10만원/월x12회/년
	팀장통신비지원			1,200,000	10만원/월x12회/년
	사무용품비	1,500,000	800,000	1,000,000	복사기 토너 외
	도서인쇄비	2,000,000	5,000,000	5,000,000	명함,회의자료,달력 인쇄 외
	비품구입비	2,000,000	1,000,000	1,200,000	전산기기 등 자산 구입
	소모품비	600,000	400,000	600,000	봉투 등 5만원/월x12/년
유지비	사무실 임대료	4,800,000	4,800,000	4,800,000	40만원/월x12회/년
	사무실 관리비	2,400,000	1,500,000	1,600,000	전기 등 관리비
	업무차량	1,000,000	900,000	900,000	업무차량 종합보험료
		3,000,000	5,000,000	5,000,000	유류 42만원/월x12개월
		2,000,000	3,000,000	3,000,000	통행료 등 정비, 유지비

회의비	사무기구	600,000	600,000	600,000	4회/분기×15만원
	광역시도 회장	1,200,000	1,300,000	1,500,000	5회/분기×30만원
	이사회	2,000,000	1,000,000	2,000,000	4회/분기×50만원
	정기총회	10,000,000	14,000,000	15,000,000	8차 정기총회(식대 준비물)
	임시총회		3,000,000	5,000,000	제5대 임원선거, 임시총회
활동비 [여비규정]	사무총장(비상근)	11,440,000	6,000,000	10,800,000	30만원×36/년/월 3회
	TF, 연대, 대외사업	11,200,000	6,000,000	6,000,000	4명×30만원×5회
	위원회	13,440,000	6,000,000	6,000,000	6명×30만원×4회
	선거관리위원회			3,000,000	제5대 임원선거 활동비
	감사	5,400,000	4,800,000	5,400,000	2명×30만원×9회
	사무기구	20,160,000	18,000,000	18,900,000	7명×30만원×9회
사업비	업무추진	12,000,000	8,500,000	8,400,000	70만원/월×12/년
	집회비		4,300,000	6,000,000	체불금등 대응
	홍보비	2,000,000	500,000	1,000,000	홍보, 현수막, 스티커 등
		2,400,000	2,000,000	1,200,000	신문 연간계약 광고포함
행사비 [워크샵]	사무기구	1,800,000	860,000	1,800,000	2회×9명×10만원/인당
	광역시도 회장단	3,800,000	2,300,000	3,800,000	2회×19명×10만원/인당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기타	6,000,000	9,900,000	12,000,000	중식, 선물, 경조, 화환, 공로패외
법률자문비	법률자문 연간계약	6,000,000	2,700,000	0	
이월금	총회비 10% 이상			32,000,000	정관에 의거한 이월금(개정)
예비비		4,690,547		2,431,743	
합 계		255,090,547	236,400,000	332,621,743	

사무실 보증금 2,000만원 별도

확인	사무총장 : 최춘식 인)
----	---------------

사 업 계 획

2018년 7월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1. 목적 및 사업별 주요 추진내용 (종합)

1)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목적

제2조(목적)

2018년 6월 11일 건설기계 사업자 발전방안 협의체 후속조치 합의에 따라 각 기종별 사업목적, 사업내용 차별화로 인하여 보안상 총회 당일 구두로 설명에 정임.

2) 사업별 추진내용 [정관 제4조(사업)]

No	사 업 명	세부 추진 내용
1		2018년 6월 11일 건설기계 사업자 발전방안 협의체 후속조치 합의에 따라, 각 기종별 사업목적, 사업내용 차별화로 인하여 <u>보안상</u> 총회 당일 구두로 설명에 정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확인

사무총장 : 최춘식 인)

2. 2018년 4대 사업기조

- ① 27개 기종 건설기계 사업자 결속력 확대!
- ② 건전한 건설기계 임대시장 풍토 조성!
- ③ 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 권익보호!
- ④ 건설기계인으로서 사회적 책무 이행!

3. 2018년 4대 중점사업

- 1) 건설기계 인으로서 사회적 책무이행
- 2) 건설현장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 3) 건설기계 기능, 산업안전, 건기법등 교육
- 4) 건설기계 제작사와 소비자와의 만남
 - 중장비 전시회 개최(일산 킨텍스)

4. 월별 주요 일정

월	주요 추진 내용	비고
1월	▶ 제8차 정기총회 개최(사업결산, 사업계획 승인) ▶ 사무기구 워크숍 진행(법정단체 설립 방향 설정)	
2월	▶ 광역 시도연합회 회장단 워크숍 회의	
3월	▶ 1/4분기 정기 감사 실시, 1/4분기 정기 이사회 개최	
5월	▶ 광역 시도연합회 회장단 회의	
6월	▶ 2/4분기 정기 감사 실시, 2/4분기 정기 이사회 개최	
8월	▶ 광역 시도연합회 회장단 회의	
9월	▶ 3/4분기 정기 이사회 개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2018년 한국중장비전시회 개최(일산 킨텍스)	
10월	▶ 제5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 공고	
11월	▶ 제5대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12월	▶ 4/4분기 정기 감사 실시, 4/4분기 정기 이사회 개최	

5. 2018년 4대 중점사업 세부추진 방향

1) 건설기계 인으로서 사회적인 책무이행

1) 추진배경

건설기계인으로서 건설, 토목, 항만, 각종 현장에서 이 땅 산업화와 국가 기간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며 기여해 왔으며, 이를 더욱더 발전 시켜 국민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각종 재난 사고, 폭우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 등에 건설기계인으로서 사회적인 책무이행을 더욱더 조직적, 체계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며,

또한 건설기계인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하기 위하여 재능기부, 불우이웃돕기 등을 확대하여 사회적인 책무이행에 있다.

2) 추진사업

- ▶민관 합동 각종 재난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대응
 - 지역별 지자체와 각종 재난 사고등에 대한 대응 협약 체결
 - 신속한 해결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 ▶국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재능기부, 불우이웃돕기 진행
 - 각 지역별 진행

3) 소요예산

- 10,000,000원(회비 중 활동비 및 사업비)
 - 긴급 재난 대응본부 천막구입 및 비품 구입 = 1,000,000원
 - 지역별 각종 회의 및 출장 경비 : 16개 광역시도×40만 = 6,400,000
 - 기타 잡비 및 등 = 2,600,000원

2) 건설현장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1) 추진배경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근로자 최저임금 상승, 굴삭기 배기가스 배출규제 및 친환경 바람에 따른 신 엔진 도입으로 굴삭기 신규 구입단가 10% 이상 인상, 각종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임대단가는 약 10년째 동결 및 오히려 하락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굴삭기 임대단가는 사)한국물가정보지,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서 매월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80%선에서 계약되고 있으며, 일부 건설사들의 과당 경쟁 유발로 굴삭기 저 단가 유도 및 요구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굴삭기 임대단가 현실화로 공정한 거래정착, 일한만큼 대가 지불, 국가 경제성장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등을 감안하여 개인 영세사업자들의 생활권 확보와 공정한 사회건설 정착을 위해 건설기계 적정 임대단가, 일일 8시간 작업을 우리 스스로 정착한다.

2) 추진사업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 생활권 보장

- 적정 임대단가 및 일일 8시간 작업 당위성 꾸준한 홍보
- 밴드 활용으로 전체 회원께 실시간 정보공유
- 악덕 건설사 수합 공포 및 제재조치 실시

▶건설현장 공정거래 시장 질서 확립

- 국토부, 건설사와 주기적인 협의체 구성으로 시장질서 확립
- 불공정 거래 및 악덕 건설사 정부, 관공서 진정 등

3) 소요예산

-10,000,000원(회비 중 활동비 및 사업비)

-건설, 토목현장 현장 순찰 및 관리 : 월/1회×30만/1회 = 3,600,000원

-건설사 관공서 간담회 및 회의 경비 : 월/1회×30만 = 3,600,000

-기타 잡비 및 등 = 2,800,000원

3) 건설기계 기능, 산업안전, 건기법등 교육

1) 추진 배경

27개 건설기계 기종은 각종 건설, 토목 현장의 악조건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우려, 각종 관련법 숙지 미흡으로 산업안전, 건기법, 건산법 등의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계는 첨단화 과학화로 그 기능이 다양해져 각 기종별 건설기계 기능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 추진사업

▶교육위원회 구성 및 전문가 양성

- 1) 건설기계 기종별, 유형별, 작업형태별 전문 기능강사 양성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 2) 산업안전, 건기법, 건산법 등 건설토목 관련법 전문가 양성
-안전사고 사전예방, 체불금 대응, 각종위법행위 사전차단 등 강사육성

▶전국 회원대상 교육 실시

- 각 지역별, 기종별 일정에 의거하여 교육 실시
- 필요에 따라 교육 수료증 발급

▶27개 건설기계 기종 단체와 주기적인 교류를 통한 정보공유

- 타 기종과 주기적인 회의체 운영

3) 소요예산

- 11,100,000원(회비 중 위원회 활동비 및 사업비)
 - 교육위원회 구성(법무팀 등) 활동비 : $5\text{명} \times 30\text{만} \times 4\text{회} = 6,000,000\text{원}$
 - 지역별 교육 홍보 회의 활동 경비 : $\text{월}1\text{회} \times 30\text{만} \times 12/\text{년} = 3,600,000$
 - 기타 교육자료 복사 및 기자재 준비 = 1,500,000원

4) 건설기계 제작사와 소비자와의 만남을 위한 중장비 전시회 개최

1) 추진 배경

중장비 제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합리적인 유통체계 확립, 업계 상호간 교류증진 도모, 신기술 도입 유도 등 제작사와 소비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신기술 유도와 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중소형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크레인등 건설기계와 굴삭기 어태치먼트, 트럭 컨베이어, 펌프, 각종 소모품 등을 매년 1회 한국중장비 전시회를 개최한다.

2) 추진사업

▶2018년 한국중장비전시회 개최

-2018년 9월 5일 ~ 7일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3홀

3) 실적



2016년 한국중장비 전시회	
2017년 한국중장비 전시회	

6. 회의체 운영 계획

사무기구 회의	▶ 주기 : 돌발 등 주요 현안문제 발생시 ▶ 참석대상 :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각 국장, 실장 ▶ 안건 : 현안문제 공유 및 이후 방향 논의
광역 시도 회장단 회의	▶ 주기 : 반기 1회 워크숍 진행 (1박 2일) ▶ 참석대상 : 중앙회장, 광역시도 회장 ▶ 안건 : 정기이사회 대비 안건 심의 및 현안문제 협의
이사회 회의	▶ 주기 : 분기 / 1회 3, 6, 9, 12월 둘째주 수요일 ▶ 참석대상 : 이사
총회	▶ 주기 : 매년 1회 (1월 4일 실시) ▶ 참석대상 : 광역시도 회장, 일반대의원 ▶ 안건 : 총회의 의결사항에 의거한 안건

7. 각국별 사업계획

국명	사업명	세부 추진 내용	비고
총무	지원사업	▶ 대내적인 각종 행사 회의체 지원 ▶ 임원 일정 등 전건연 스케줄 관리 ▶ 자산, 직인, 문서 수발, 비품, 소모품 관리 ▶ 홍보, 간행물, 신문기사, 책자 등 관리	
	예산관리	▶ 사업계획 예산편성 결산 관리 ▶ 금전출납, 각종 회계전표 처리 관리	
	복지사업	▶ 직원 복지, 임금 등 지급 관리	
정책	정세 분석	▶ 정부, 건설기계 타 단체, 노동계, 건설사, 언론 등 동향 파악 및 정세분석 대응 ▶ 건설기계 관련 입법화 발의 및 진척 파악	
	지역과 정책 공유	▶ 지역 정책 담당자 회의체 구성 및 정보공유 ▶ 전건연 내 각종 회의체 회의 참석	
	회원 실태조사	▶ 회원 생활수준, 생활실태, 의식 조사 ▶ 회원 애로사항, 요구사항, 개선사항 등 파악	
	기획	▶ 회원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발간 -기 가입 및 신규 가입 회원 대상 교육	

		-건설기계 관련법, 산업안전 등 교육 ▶ 중장기적인 조직 확대 방안 기획 및 실천 ▶ 대정부 및 국회 대응 -건설기계 관련 입법화 내용 초안 마련 -대정부 관계부처와 관계개선 방안 모색	
	기타	▶ 사업목표 기조 등 사업계획 진척을 체크 ▶ 중장기적인 조직혁신, 확대, 지향목표 실천 등 방안 마련	
홍보	주기적 홍보 발행	▶ 월 2회 이상 홍보 발행 - 속보, 성명서 보도자료 등 대응 - 정부, 건설기계 단체, 노동계 동향분석 ▶ 회원 알권리 제공 - 각 지역의 현안문제 등 실시간 제공	
	현안문제 대안제시	▶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갈등 대응 - 갈등 유발 원인 분석, 대안제시 ▶ 악질 건설사 체불임금 대응	
	회원 의식화	▶ 회원 교육 - 건설기계 관련법 및 교육책자 발행 배포 ▶ 정체성 홍보 - 설립배경, 정책, 추진사업등 홍보	
	홈페이지 관리	▶ 행사, 소식, 돌발 상황, 현안 실시간 대응 ▶ 자유게시판 악플 및 회원 민원 대응 ▶ 기관지, 속보, 소식지, 교육자료 등 관리 ▶ 정부 동향, 통계 등 홈페이지 게시 상황공유	
	교육 및 교육자료 발간	▶ 전건연 소개 및 지향목표, 차별화 등 교육 ▶ 건설기계 현안문제 대안제시 ▶ 건설현장 산업안전, 복지, 계약서등 기초 자료 교육 및 자료 발간	
	일반	▶ 건설기계 시장 동향 스크랩, 분석 및 대응 ▶ 국회 입법화 추진 관련 대응	
조직	조직확대 강화사업	▶ 임원 중심 지역 순회 간담회 강화 ▶ 각 지역 연합회 중심 모임 강화	
	내부조직	▶ 각종 결정사항 전체 회원 대상 실시간 전달	

	관리	▶ 지역 조직 담당자 회의체 구성 참여	
	회의 및 집회	▶ 전건연 각종 회의체 정례화 확립 및 참석 ▶ 지역 현안문제 집회 투쟁 참석 지원	
	연대사업 활성화	▶ 타 단체와 유대관계를 강화 ▶ 정부, 국토교통부, 우호적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및 세미나를 통한 소통과 연대강화	
사업	체불금 대응	▶ 광역시도 체불임금 현황 파악 및 대책수립 - 건설사, 원하청간 거래분석 - 국토 교통부 등 진정 및 법적대응	
	차별 및 부당처우에 대한 개선	▶ 27개 건설기계 기종 근무시간 및 임대료 파악 및 대책수립 - 기종별, 각 광역시별, 건설 현장 별 등 차이점 분석 및 대책 수립	
	산업재해 추방	▶ 건설기계 산업 재해 분석 및 대책수립 - 사례 분석을 통한 예방 및 교육 ▶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방안 마련	
	유대관계 강화	▶ 각 지역 회원간 유대관계 강화 - 회원 애경사 등 각종 모임 공유 및 참석 ▶ 건설기계 소모품 구입 등 공동구매 추진	
대협	임원 수행	▶ 회장, 임원 지 순회, 간담회, 집회 등 수행 - 임원 일정 관리 ▶ 각 지역 연합회 중심 모임 강화 및 참석	
	대외업무 진행	▶ 건설협회, 학회, 시민단체 등 대외업무 진행 ▶ 정부, 국회, 지자체 등 대외업무 ▶ 지역 연합회 활동 지원 및 지도	
	행사진행	▶ 각종 회의체, 세미나, 집회 등 계획수립 ▶ 전건연 각종 회의체 정례화 확립 및 참석 - 임원회의, 총회, 이사회 등 각종 소모임 ▶ 지역 현안문제 집회 투쟁 참석 지원	

확인	사무총장 : 최춘식 인)
----	---------------

2019년 주요 추진사업

2018년 7월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1. 2019년 4대 중점사업

- ① 27개 기종 건설기계 사업자 조직력 확대!
- ② 각 분야별 교육위원회 구성 및 강사 양성!
- ③ 건설기계 업계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진행!
- ④ 건설 토목현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정착!

2. 2019년 월별 주요 일정

월	주요 추진 내용	비고
1월	▶ 제9차 정기총회 개최(사업결산, 사업계획 승인) ▶ 사무기구 워크숍 진행(2019년 추진사업 실천방안)	
2월	▶ 광역시도연합회 회장단 워크숍 회의	
3월	▶ 1/4분기 정기 감사 실시, 1/4분기 정기 이사회 개최	
5월	▶ 광역시도연합회 회장단 회의	
6월	▶ 2/4분기 정기 감사 실시, 2/4분기 정기 이사회 개최	
8월	▶ 광역시도연합회 회장단 회의	
9월	▶ 3/4분기 정기 이사회 개최 ▶ 2019년 한국중장비전시회 개최(일산 킨텍스)	
10월	▶ 하반기 사무기구 워크숍	
11월	▶ 정기총회, 이사회 대비 광역시도회장단 워크숍	
12월	▶ 4/4분기 정기 감사 실시, 4/4분기 정기 이사회 개최	

3. 2019년 4대 중점사업 세부 실천방안

No	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소요예산(천)	일정
1	27개 기종 건설기계 사업자 조직력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모임 중심 월 1회 회의 정례화	3,600	월1회

	확대!	-정보공유, 현안문제 공동대응 등 건설기계 업계 발전을 위한 방안모색 및 협의 -타 건설기계 기종 참여 지속 확대		
2	각 분야별 교육위원회 구성 및 강사 양성!	▶각 분야별 전문 교육강사 양성 -건설기계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관계법 등 각 분야별 전문 교육 강사 양성 -관련단체와 업무협약 및 위탁교육 실시 -각 지역별 순회로 회원중심 교육 실시	12,000	매월
3	건설기계 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진행!	▶건설기계 업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통계 등 정책사업 진행 -회원 중심 건설기계 시장 및 어태치먼트 사용 실태 등 관련 설문조사 진행 -건설, 토목현장 안전, 불법 사례등 조사 및 이후 대응방안 마련	10,000	5월 11월
4	건설 토목현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정착!	▶건설현장 체불, 불공정거래, 불법 부착물, 산업안전위반 등 주기적인 현장순회 -불법, 탈법등 발생시 관할 관청에 진정 -회원중심 교육 실시	12,000	연중

확인

사무총장 : 최춘식 인)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정관

2018년 7월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본회”, “건설협”이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 Construction Machinery Individual Council (약칭 “CMIC”)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건설기계 대여업 을 영위하고 있는 개별, 연명 사업자 단체로, 건설기계 인으로서 사회적인 책무이행 및,

2018년 6월 11일 건설기계 사업자 발전방안 협의체 후속조치 합의에 따라,
각 기종별 사업목적, 사업내용 차별화로 인하여 보안상 총회 당일 구두로 설명 예정임.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9(도마동)에 두며, 아래와 같이 광역시도회를 둔다.

1. 강원도회 : 강원도 동해시 평릉길 19-1
2. 경기도회 : 경기도 경기 포천시 호국로 1118 가동 2층 9호
3. 경남도회 : 경남 진주시 대신로 103번길 16
4. 경북도회 : 경북 영천시 약전길 18
5. 광주시회 : 광주시 서구 매월2로 53, 29-207
6. 대구시회 : 대구 남구 대명남로 46, 2층
7. 대전시회 : 대전시 서구 변동로 49, 3층
8. 부산시회 :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72
9. 서울시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7, 410호
10. 울산시회 : 울산시 남구 어은로 33-1, 4층(무거동)
11. 인천시회 : 인천 서구 열우물로 197번길 8 신세계프라자 201호
12. 전남도회 : 전남 나주시 남고문로 72 남고문주유소(내)
13. 전북도회 : 전북 익산시 임북로 153 정세의료기 2층

14. 제주도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로4길 24
15. 충남도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1256
16. 충북도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16번길 46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난, 재해 발생 시 인력 및 건설기계 신속 투입으로 복구활동 지원

**2018년 6월 11일 건설기계 사업자 발전방안 협의체 후속조치 합의에 따라,
각 기종별 사업목적, 사업내용 차별화로 인하여 보안상 총회 당일 구두로 설명 예정임.**

12. 건설기계 업계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통계, 정책사업
1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자로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 사업의 등록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동법 시행규칙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85조(회원의 자격)에 의거하여 건설기계 개별, 연명 대여업 등록을 한자로서 회원 가입을 마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건설기계 관련단체, 건설기계 관련업체(정비, 제작 및 판매, 부품생산, 부품판매업체 등) 자가용 건설기계 보유업체, 건설기계 업무와 관련한 학술단체 또는 특별회원이 되고자 가입을 신청한 자로서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1호 관련하여 부득이 한 사유로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건설기계 조종 당사자가 가입 시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단, 협회 임원으로 임후보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본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모든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인 이상으로 하며 이사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둔다. 단,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3.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1인을 선출한다.
3. 감사는 회원 중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5.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①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당연직, 일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각 광역시도회 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2. 일반 대의원은 각 광역시도회에서 본회로 당해 연도 회비납부 회원 수 100명당 1명씩 배정 하며, 선출방법은 광역시도회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의결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①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 본회의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34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해산

제35조(법인해산) ①본회는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②총회의 결의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 처리 등 청산) ① 본회의 해산 시 회장은 청산인이 된다.

②잔여재산 등 청산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청산인을 둘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37조(합의서 이행) **본회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합의서(2018. 5. 11.)에 따라,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이행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

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18년 7월 5일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상기내용을 확인하고 기명날인 한다.

확인	사무총장 : 최춘식 인)
----	---------------

[참고] 비영리 법인 설립 대한건설기계협회 정관 목적, 사업 비교표

구분	건설기계사업자협의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목적		협회는 건설기계사업자의 품위보전, 권익옹호 및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동원태세 확립에 기여하며,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자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고 건설기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관리와 건설기계화 시공을 촉진키 위한 건설기계사업 관련 제반 제도의 개선은 물론 연구개발에 진력하며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건설기계사업 진흥을 촉진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가.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동원사무의 지원 나.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 다. 건설기계 기술에 관한 연구와 보급 라. 해외건설기계 기술에 관한 정보도입 및 보급 마. 회원의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련 법령.제도.시책 등에 관한 대정부 건의 및 자문 바.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 및 단속 사. 업종별 상호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조정 아. 회원의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지도업무 자.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 운영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 공제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2018년 7월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N0	직위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주요약력	임기	연락처
1	회장	이주성	680216	(우)15477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94-4 306 (골드타운)	-97년 청암토건 설립 -13년~16년 전국건설기계 경기연합회 회장 -18년 2월 경기과학기술대 졸업 -현)전국건설기계연합회장 -현)굴삭기 대여 사업자	2018.07.~2019.12.31	010-3779-4305
2	수석	이주원	680607	(우) 25758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7 3동 102호 (천곡한양1차 아파트)	-11년~13년 전국건설기계 강원 동해협회 회장 -13~16년 전국건설기계 강원연합회 수석부회장 -현)전국건설기계 강원연합회 회장, 중앙 수석부회장	“	010-9220-5000
3	이사	최춘식	660920	(우) 52231 경남 산청군 금서면 가재길 8-4	-85년 경남산청고 졸업 -13년~16년 전국건설기계 경남산청협회 회장 -17)전국건설기계 경남연합회 회장 -현) 중앙 사무총장	“	010-9089-4748
4	이사	최창섭					010-3771-6248
5	이사	이 한					010-9316-4708
6	이사	공재욱					010-6873-7300
7	이사	신일용					010-3602-0190
8	이사	차상극					010-3519-8

						882
9	이사	최병열				010-2 746-1 198
10	이사	김형부	57081 1	(우) 48959 부산시 중구 보수북길 26 201호(대야성 빌라)	-76년 경남항공고 졸업 -13년~14년 전국건설기계연합 회 감사 -현)전국건설기계 부산연합회 회장	010-3 832-0 801
11	이사	안용현				010-8 889-1 221
12	이사	윤영기				010-3 574-0 224
13	이사	박창근				010-3 712-0 169
14	이사	김재토	60022 5	(우) 58265 전남 나주시 이창택지길 58-10 B동 302호	-87년~89년 삼대건설 -03년 건설기계 임대사업 -현)전국건설기계 전남연합회 회장	010-5 323-0 998
15	이사	박명열				010-7 128-0 390
16	이사	이문형				010-3 691-8 581
17	이사	백상현				010-5 189-2 750
18	이사	이동현				010-4 691-4 830
19	이사	김은규	58101 3	(우)15391 경 기 안산시 단	-00년 신흥중기 설립 -14년 전국지게차연합 안산협	010-9 089-4

				원구 원일2길 18-11 302	회 수석총무 -12~16년 전국지계차연합회 안산협회장 -현)전국지계차연합회 부회장 지계차 대여 사업자		748
20	이사	지태구	64050 1	(우)34582 대 전시 동구 성 남로 15 스마 트 뷰 104-1503	-사)시추조사협회 총무 -현)시추조사협회 회장 천공기 대여 사업자		010-5 454-9 220
21	감사	이승원	57052 3	(우) 4 2 4 8 3 대구 남구 대 명로 14길 84 대영파크501호	-14년~17년 전국건설기계대구 연합회 회장 -17년 전국건설기계 수석부회 장 -현) 전국건설기계 중앙 감사 -현)굴삭기 대여 사업자	“	2번 굴삭기
22	감사	황용진	65012 6	(우)26452 강 원도 원주시 강변로 119, 유 승 아 파 트 103동 701호	-10년~13년 전국건설기계 강 원원주협회 회장 -13년~16년 전국건설기계 강 원연합회 회장 -현)전국건설기계 강원원주협 회 회장, 중앙회 감사 -현)굴삭기 대여 사업자	“	2번 굴삭기

<서식 10-1>

취 임 승 낙 서

◎ 주소 : (우) 15477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94-4 306(골드타운)

◎ 성명 : 이 주 성

◎ 생년월일 : 680216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18년 7월 6일

이사 이 주 성 (인)

<서식 11>

특수관계 부존재확인서

본인은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이사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
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
당되지 아니하며, 이 후 동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7월 6일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이사 이 주 성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전체 임원 취임자 상기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예정임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2018년 7월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1. 회의일시 : 2018년 7월 5일 목요일 13:00~
2. 회의장소 :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83]
3. 회의안건 :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창립 총회
4. 출석회원(발기인) : 12명 중 11명 참석
5. 결석회원(발기인) :
6. 회의내용 :
 1. 정관의 심의
 2. 임원, 이사, 감사 선출 건
 3. 사업계획 심의 건
 4. 수입 지출 예산 심의 건
 5. 기타토의 (주 사무소 건)

※ 7월 5일 창립총회 진행 과정 및 회의결과를 작성 할 예정임
최종 완료 후 임원 취임자가 확인 서명.

안건2

건설기계 작업시간 준수 건

주문 → 그동안 전국 회원님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건설기계 8시간 작업 준수를 쟁취해 왔습니다.

하지만 작금에 있어 전국 곳곳 산발적으로 8시간 작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3일 2/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총회 개최 시 작업 시간 준수를 위한 홍보 현장 순회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문 → 총회를 앞두고 경기연합회 최창섭 회장이 안전을 상정하였습니다. 안전 제안자 부연 설명과 함께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 상정 의뢰서

(Fax 042-523-8051, 이메일 kungl5238050@hanmall.net 으로 전송바람)

회 의 명	비영리법인 설립 창립 및 임시총회 개최건					
개 회 일	2018 년 7 월 5 일					
장 소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대강당					
발 의 자 (개인 또는 공동발의)	지역	경기도	직책	회장	성명	최 창 섭
	지역		직책		성명	
	지역		직책		성명	
안 건 명	지역 협회 명칭 사용 문제로 소속감이 불분명함을 제기함					
내 용	서울연합회 소속 서경인 텐 협회가 올해부터 서울경기인천골삭기협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경기도연합회에서는 "경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 문제를 중앙회 임시 총회 안전으로 상정 의뢰합니다.					
첨 부						

안전4

기타토의 건

주문 → 기타로 토의할 안전을 상정하여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관

1990년 7월 제정
1994년 4월 1차 개정
2004년 6월 8일 2차 개정
2006년 6월 16일 3차 개정
2011년 3월 30일 4차 개정
2013년 4월 5일 5차 개정
2014년 3월 25일 6차 개정
2015년 4월 8일 7차 개정
2016년 1월 28일 8차 개정
2017년 1월 4일 9차 개정
2018년 1월 3일 10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약칭“전건연”)라 칭한다. 이하 “중앙회”라 한다.

제2조[조직]

본회는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그 사업자나 대리인을 회원의 자격으로 구성된 단체들로 규합된 연합체로써 각기의 독립된 개인과 단체가 서로 구속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네트워크(net work)으로 연결됨을 원칙으로 하며, 조직은 별도의 조직표로 정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건설기계의 합리적인 운영 관리와, 관련 제도와 법의 개정을 통하여 건설기계 대여업 시장의 건전한 풍토 조성을 통하여 업계의 발전을 기하고, 건설기계인의 권익보호와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토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사회발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설기계인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소재지]

본회의 중앙회(본부)는 대한민국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둔다.

제5조[건의 및 자문]

본회는 제3조(목적) 및 제6조(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회를 통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의 자문에 응한다.

제2장 사업

제6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긴급 동원 대상자로서의 의무수행
2. 건설공사 기계화에 필요한 조사 연구와 통계자료 수집
3.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 단체로 전국 회원의 결속
4. 건설기계의 합리적인 운영관리 및 업계의 발전을 위한 조사와 연구
5.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사업
6. 회원의 복지를 위한 사업
7. 회원의 권익 보호 사업
8. 국토건설 및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9.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사업에 적극적인 지원 사업
10.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일체
11. 협동조합의 설립
12. 건설기계 사업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27개 기종과 정책 연대 및 사업

제3장 회원

제7조[회원]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은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그 사업자나 대리인을 회원의 자격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그 대표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건설기계 업계와 연관이 있는 건설기계의 제작, 판매사, 부품판매업, 정비업, 폐기업, 중고건설기계매매업 및 유사건설기계 등 기타 본 회의 조직과 연관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자 및 그 대리인으로써 본 회의 목적 및 사업에 적극 찬동하여 본회와 연대하고자 회원의 가입을 신청한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승인 한다. (특별회원이 경영하는 업체를 회원사라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는 의무
2. 건설기계대여사업자로서 품위를 보전하는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4. 회원증 소지의 의무

제9조[회원의 부가의무]

1. 회원은 1일 8시간 작업을(08시~17시)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건설기계 지정된 공간에 회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통합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권익을 균점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1조[자격정지]

1. 회원은 정관에 의한 목적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징계처분 등을 받았을 때, 그 기간 중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정관의 제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되는 직위에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그 직이 해임된다.
2. 회원으로서 회비를 체납한 자는 체납 기간 중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2조[자격상실]

회원이 소유한 건설기계를 매매 또는 양도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한 때에는 회원으로써의 자격을 심의한다. 단, 일정기간 사업의 휴업 또는 장비의 대체 등으로 공백이 있을 시는 이사회의 확인과 승인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자문기관

제13조[임원의 구성]

1. 임원은 상근 임원과 비상근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회는 회장 1인, 수석부회장, 당연직 부회장, 사무총장 1인, 감사 2인, 각 국장을 둔다. 단, 1인 이상의 공동 회장제로 할 수 없다.
3. 각 광역 시도 연합회는 개별적 정관에 따라서 임원을 선정할 수 가 있으며 광역 시도 회장은 중앙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되고 권역별 부회장은 각 권역에서 선정한다.
4. 당연직부회장은 수석부회장 1인을 부회장단에서 선출하여 회장의 업무를 보필하게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통합관리 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광역 시도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각 광역 시도연합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통합관리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2018년 1월 3일 개정)
4. 사무총장(국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단, 채용직인 경우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감사는 경리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6. 본회의 임원은 당 업계의 유사단체의 임원이나 보직을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중앙회 상근직은 지역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선출]

1.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 입후보 및 선출

방법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임원 입후보 자격은 소속된 광역 시도연합회의 중앙회 회비가 완납된 상태에서 선거 공고일 기준 정회원으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회원의 자격에 의거하여 3년 이상 계속 본인 명의의 건설기계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단, 중도 사업 중단 및 포기, 이전, 양도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018년 1월 3일 개정)

3. 회장은 1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사무총장 및 임원(국장)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당연직 부회장 임기로 한다.

3. 이사과 감사, 사무총장(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5.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사무총장(국장)의 임기는 차기회장이 선출되어 후임 사무총장(국장)을 선임, 이사회인준을 득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명예회장 및 고문]

1. 본회의 조직은 명예회장 또는 고문(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퇴임회장 중에서 단체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이사회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자문위원)은 퇴임회장, 이사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력이 풍부한 자 또는 사회적이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4. 명예회장 및 고문(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명예회장 및 고문(자문위원)은 위촉된 후 활동기간을 차기 임원선출이 있는 정기 총회 때까지로 한다.

제18조[임원 등의 보수 및 수당]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한다.

제5장 기관 및 총회

제19조[기관]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 및 회의체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광역 시도 연합회
4. 사무기구
5. 선거관리위원회
6. 감사위원회
7. 각종위원회

제20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다음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가.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시
 - 나. 대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시
 - 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2.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다.
 3. 총회의 의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 결의로서 행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구성]

중앙회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각 광역 시도 회장
2. 일반대의원

제22조[일반대의원 선출]

1. 총회에 참석하는 일반 대의원은 각 광역 시도 연합회에서 중앙회로 당해 연도 회비납부 납부 회원 수 100명당 1명으로 자격을 부여하여 구성한다.
2. 선출 방법은 각 광역 시도 정관에 의한다.

제23조[총회 의결사항]

1.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정관의 개정
 - 나. 임원선출과 해임 및 임명 동의
 - 다. 세입, 세출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 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총회에 제의하는 사항
 - 마.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항 “가”, “마”항의 결의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광역시도 연합회 총회]

각 광역시도 연합회 총회는 각 광역시도별 개별 정관에 의한다.

제6장 회의

제26조[이사회]

1.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가. 분기별 1회 정기회의
 - 나. 이사회 재적인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할 때
 - 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각 국장
2. 각 광역시도 회장 외 1인
3. 각 광역시도에서 중앙회에 당해 연도 회비 납부 기준 회원 수 2,000명 이상일 경우 추가 1명을 배정한다.

제28조[이사회의 결의사항]

1.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나. 사업계획안 및 변경 안에 관한 사항
- 다. 일시 차입 및 기채에 관한 사항
- 라. 회원징계 및 청원에 관한 사항
- 마. 포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 바. 중요한 대 정부 건의 사항 및 관련 법규 개정에 관한 사항
- 사.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아. 회원의 복리에 관한 사항
- 자.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차. 광역시도 연합회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 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9조[의장]

1. 회장은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의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30조[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차기 회의에서 회의록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의 소집공고]

회장은 각종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소집공고를 해야 하며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 구성원에게 회의 자료를 배포한다. 단, 정기총회는 15일전에 소집 공고한다.

제7장 사무기구

제32조[사무기구]

1. 본회의 사무기구는 별도의 조직표에 기재된 것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직제를 두며 그에 해당되는 직무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 가. 총무국
- 나. 정책기획국
- 다. 홍보국
- 라. 조직국

마. 사업국

바. 대외협력국

2. 사무기구 각국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임원에 준하는 별정직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직급과 정원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다.

제33조[상근직 급여 및 수당]

상근직이라 함은 채용된 임직원으로 보수, 급료,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회의에서 의결하며, 그에 따른 대우 및 급여 기준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단, 상근직은 사무총장(국장) 등 사무원으로 한다.

제8장 위원회

제34조[위원회 설치]

1. 본회의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각종 위원회 위원장, 위원 선정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회의에서 선임한다.
4. 사무기구 상근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위원회 임기]

1. 각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2. 위원회 임기는 사안 처리 완료 후 이사회 결정으로 임기를 만료한다.

제9장 회계 및 자산

제36조[회계 및 회계연도]

1. 회계는 일반회계의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사업상 필요한 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회계연도는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와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총회에 보고한다.
3. 회계연도의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감사는 각 분기별로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연간회계는 정기 총회 시 보고한다.
5. 중대한 사안 발생 시 수시, 특별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37조[예산 및 결산]

- ① 회장은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 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예산 계획은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총예산 대비 10% 이상을 차기 회계연도로 반드시 이월해야 한다. (2018년 1월 3일 개정)

제38조[자산]

1. 자산은 재산목록에 기재된 것과, 은행 예치 계좌의 잔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잉여금 1할 이상을 적립한다.
3. 전항 적립금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39조[경리]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수수료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0조[회비]

1.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 가. 제8조(회원의 의무) 3항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 나. 특별회비라 함은 예기치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부과 징수하는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회비를 말한다.
2. 회비는 회원 1인당 년 회비로 1만원을 선납하여야 한다.
3. 회비는 회원 1인당 년 회비로 15,000원을 매년 3월 말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단, 해당 광역 시도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018년 1월 3일 개정)

제41조[수수료]

중앙회는 건설기계대여업에 필요한 제 증명을 발행하거나 추천, 알선 및 학술 용역을 실시할 때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0장 포상 및 징계

제42조[포상]

건설기계대여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조직의 활성화 및 제6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로가 있는 회원이나 유공인사에게는 회장의 추천으로 별도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서 포상할 수 있다.

제43조[징계]

1.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결의로서 징계 처분한다.

- 가. 회원으로써 건설기계사업자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 나. 규정에 의한 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일로 부터 3월 이상 체납한 때
- 다. 본회의 결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2. 전 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제명처분
- 나. 1년 이하의 회원 권리행사 정지 및 자격정지
- 다. 징계자에 대한 공개 계고
- 라. 당사자에 대한 계고

제11장 정관

제44조[정관]

본회는 정관을 근거로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정관에 의해 모든 단체가 조직되며, 모든 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정관에 의한다.

제45조[부칙]

본 정관은 창립총회 날로 부터 공포 발효한다.

제12장 출판, 제작사업

제46조[출판, 제작]

본회는 전국조직의 연대강화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출판, 제작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3장 해산 및 청산

제47조[해산]

본회는 존속이 필요치 않다는 중앙회 총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해산한다.

제48조[청산인]

제47조(해산)에 의거하여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제49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처분은 중앙회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이 한다.

제14장 보칙

제50조[준용]

본회의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세칙내규]

본회의 업무추진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중앙회의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52조[조직표]

본회는 다음의 조직표에 준하여 중앙회 및 각 광역시도 연합회를 두어 운영한다.

가. 중앙회 조직표

나. 각 광역시도 연합회 조직표

다. 각 광역시도 연합회 산하에 각 시군구의 협의회나 협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정관은 전국중기경영인연합회의 창립총회를 거친 날(1990년 7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정관은 총회를 거쳐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굴삭기 작업 시 주의사항

1. 굴삭기(건설기계) 작업의 주용도 외의 작업을 하다 사고 시에는 보험처리가 안됨 또는 보험처리를 안 해줄 수 있음.

2. 굴삭기(건설기계) 주용도 작업

- ① 굴착작업(굴삭작업)
- ② 상차작업
- ③ 브레이커(압쇄기)
- ④ 크라샤(분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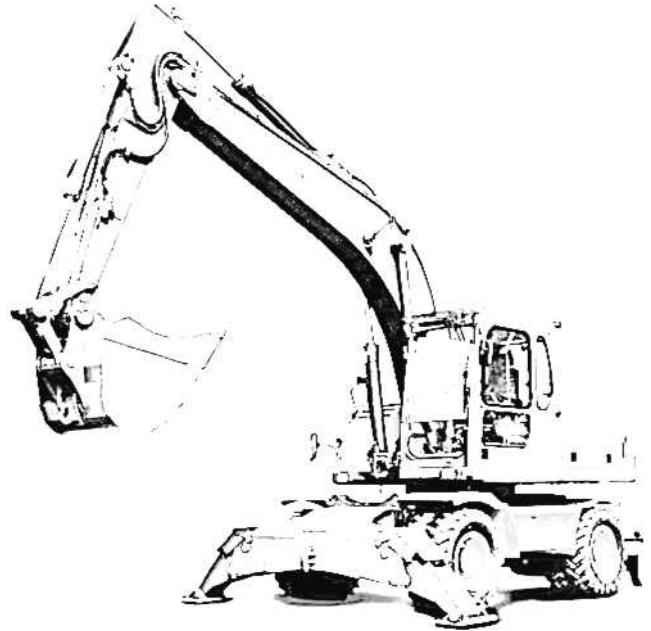
3. 굴삭기(건설기계) 주용도 외의 작업을 할 경우에 는 작업지시자의 지시를 받고 해야 함.

(작업지시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 시에는 구상권이 본인에게 올수 있음)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발행일 | 2018년 7월 5일 목요일

발행인 | 회장 이주성

펴낸곳 |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사무기구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9 (도마동 180-17)

전 화 | 042-523-8050

팩 스 | 042-523-8051

이메일 | kungi5238050@hanmail.net

성 명